



안사회계법인

Anse, the Best Answer

829-7557

829-7555

anse.com

..... ESG컨설팅과 인증,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설계자문, 기업가치평가

- PA 전문 ① 상장, 코스닥, 대기업의 내부회계 Private Accounting 전문 특화
- 회계감사 ② 소속회계사 110명 + 세무직원 330명 = 성실한 440명 활동
- 세무대리 ③ 대형회계법인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숙련된 전공별 회계사
- 재무자문 ④ 2022년 매출액 650억원으로 196개 법인 중 10번째 규모
- 경영컨설팅 ⑤ 서울 핵심지역과 광역시 총 21개의 현지밀착 1시간내 사무소
- 회계기장 ⑥ 모두 업무기획·계약·현장실행·품질관리 전 공정 책임수행
- 창업지원 ⑦ 獨自創安(독립, 자율, 창업, 안전) 경영이념과 적법투명회계
- 가업승계 ⑧ 고객현장근무 중심, 사전문제예방 컨설팅 파견과 재택가능

담당회계사·재경컨설턴트: 경리·재경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할 안세의 전국 사업본부의 소속 공인회계사등과 분사무소·지점

자매 회사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서울본사 (영등포)	829-7557 외부감사·세무대리·회계·기장·재무·ESG컨설팅·기업가치평가·IFRS 적용·변환 컨설팅·내부회계관리제도설계(Sox 서비스)·금융자문·인수합병 M&A자문·품질관리심리실·준법감시인·재경본부운영·전문지식정보운영팀 대표이사 박윤중·등기이사 장용석·김형석·정훈·유환철 등 75명 등기이사 파트너 / 심리실: 손세정(준법감시인 겸 상근 심리역)		
고경호·고두환·공희성·권창현·김경수·김봉수·김수범·김수영·김영근·김옥철·김종창·김준영·김준일·김형석·박규태·박기훈·박병준·박상현·박정열·박지은·배익권·송형근·설찬수·양승민·오승혁·유진우·유지운·윤형민·윤훈기·이만선·이미지·이샤야·이승환·이원재·이종량·임정운·제갈원구·조민기·조성민·조영우·진수미·최영진·최진강·표정협·한상표·홍상연·홍재권·황준호·허진영(변호사·준법지원역)			
서초강남본부	070-7668-6865 강민우·곽영미·이현섭·배문호·최민욱·황준호·정호신·박지은		
강남금융본부	070-5101-1651 우성권·김용환·김수범·홍희빈·이혜리·강용희·김현단·선지우		
가산디지털본실	02-6011-5514 이남재·정현·설찬수	강남지점	516-4199 윤봉진·장원택·김현민 + 3인
부산경남본부	051-322-8321 공병진·이동계·윤재훈 + 10인	서초지점	6245-7502 정훈·김태경·라선희 + 10인
대전충청본부	042-525-5558 이상훈·김형진·정대환 + 10인	삼성지점	571-3700 정원용·임진호·안영호 + 4인
부산지점	051-819-3308 박지훈·이성태·김수영 + 5인	여의도지점	6959-2378 변남진·양용석·황창연 + 5인
부산중앙지점	051-714-7227 이형래·홍영표·김치현 + 7인	센트럴지점	2209-0710 유환철·유지운·윤현철 + 4인
부산센텀지점	051-938-9677 이수영·허정식·이대건 + 2인	영등포지점	2633-9243 차병길·원영민·이원재 + 10인
경인지점	032-815-2641 심강수·이희곤·정영운 + 4인	가산지점	2026-8838 조재형·허근·고경환 + 3인
일산지점	031-817-4189 김종운·송주호·최민욱 + 2인	중소기업지원센터	312-2255 이익재·이준상·이승호
송도지점	032-715-5376 강우석·조승범·이승환 + 5인	품질관리팀	829-7555 박윤중·손세정·홍재권·김형석
특별자문역	유찬영 세무사, 홍현영 법무사, 이승환 노무사, 김재득 세무사, 김흥기·윤경만·박희원·이우목·이미경 경영지도사		

안사회계법인의 상장·대기업 PA(Private accounting) 업무 상세내역

안사회계법인은 거래소상장법인 코스닥상장회사 재벌집단 대기업그룹 다국적글로벌외투법인등의 내부회계협력자문 PA(Private accounting)회계재무경영자문 아웃소싱용역의 최선봉에서, 기업내부재경실무자의 애로점을 최적해결하는 경력자중심 조직임 - 빅4등에서 7년차이상의 베테랑회계사가 소속되어 능동창업적 창조활동함.(02-829-7575)

1. ESG컨설팅·인증 상장회사 등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자문, 인증업무, 환경, 사회, 투명경영전략 설계 컨설팅
2. 가치평가 기업전체가치평가(DCF 등), 기업1주당 주식가치평가, 전환사채의 주식 및 옵션 가치평가, 상환우선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옵션가치평가, 사모ABL평가, 보유투자주식평가, 이항모형 스톡옵션평가, 고정자산손상평가, 지분증권평가, 영업권 등 무형자산평가, 주식손상평가(관계사, 종속회사), PBR·PER 이용한 주식가치평가, 타회계감사 제출용 매도가능증권평가, 투자기업의 분기별 공정가치평가, 해외자회사 주식평가, 타회사 인수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무담보채권평가,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평가, 특수관계인간 주식양수도평가, RCPS용 비상장주식평가, 비상장사의 영업권 평가, 무형자산손상검토, 사회적 가치서비스 창출자문(ESG)
3. 일반재무제표 매년도 재무제표 작성·지원용역, 현금흐름표와 주석작성, 내부경리실무자의 일손부족분 결산보조, 원가회계와 제조원가계산.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명세서작성, 원가관리와 제품별 공정별 원가계산과정의 엑셀정리집계, 제조원가배부용 감가상각비계산과 생산원가반영후 최종결산재무제표작성, 반기재무제표작성, 기업인수합병영업권대가의 각 사업부 배부용역, 재무결산지원, 재무제표작성과정의 신속·고도화, 건설·조선 공사 등 진행을 검토, 분기·반기·연차 재무제표작성지원협력, 국가중앙행정 각부·지자체 등 결산지원업무, 공기업·공기관 결산지원용역
4. 내부회계분야 내부회계시스템 구축·설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구축 및 운영평가지원, 재무관리실태감사와 내부회계지원
5. K-IFRS 관련 국제회계자문 연간일정(평상시 회계쟁점자문, 질문의견서 작성, 분기재무·반기검토 작성지원, 결산마감 과 재무제표·현금흐름표·주석 작성, 연결분개재무제표, 외감현장입회대응, 해외모기업 합산재무지원)
6. 외감 아닌 기타 인증업무 합의된 절차에 의한 실사업무, 사업비정산 검토감사, 임의감사, 조성원가추정계산, 연구비 위탁정산
7.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작성·지원·자문용역, 국내외 자회사 등의 내부거래의 제거, 연결재무제표 기초이월잔액 검증
8. 사업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타당성보고서, 사업계획 미래현금흐름검토, 대규모 사업단지 개발지역·오피스텔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스타트업 지원
9. M&A 실사조사 등 인수대상회사 실사, 내부 임직원 부정적발조사, 자산부채자본실사, 자산양수도거래의 외부평가
10. 화의·법정관리 등 각급 법원 회생조사위원, 회생신청 전반 컨설팅, 관리인 조사보고서의 재검토
11. 외국·해외비지니스 감사보고서 영문번역, 해외투자와 자원개발자금 심사와 실사업무, USGAAP기준, 영문감사보고서
12. 기타 특수업무 기업의 금융감독원 특별심사 감리대응자문, 위탁수수료 예상가격 산정, 컨설팅사의 공기관 제출 인증서류 검토, 상장코스닥사 사외이사취임, 세무고문, 내부감사(상근, 비상근), 회계·세무·경영분야 겸직가능, 상장사 등 내부 감사위원회 구성원 역할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 교육 · 훈련강의저널
+ CEO · CFO · 기업법무저널

www.eAnSe.com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은
고객회사와 기업재경실무자의
“명료한 세무판단”,
“투명한 회계처리”,
“효율적 경영활동”
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회계법인이 연합하여
공동제작하는
회계세무재경 전문가의
정보자료전략컨설팅지
입니다.

1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13(화)	법인·소득세 원천징수분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개인사업자 사 업장 현황신고, 레저세(지 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매출·매입차별계산서 합 계표 제출마감일, 특별징 수 지방소득세 납부, 증권 등거래세 신고납부
20(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 함) 신고납부
26(월)	부가가치세 제2기분 환급
29(목)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개별소비세(유 류 등) 신고납부, 교육세 (금융·보험업분) 제4기분 신고납부, 교통세(교육세· 주행세 포함) 자진신고납 부, 주세(교육세 포함) 신 고납부, 일용근로소득 지 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사업·퇴직·종교인기타소 득 제외) 제출

이 달의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작성일자 2
- 임원의 급여 상여금 보수와 퇴직금의 손금산입범위 3
-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4
- 정치자금, 정당비, 정치인 후원회, 종교기부금의 세액공제 방법 5

이 달의 세무신고 Checkpoint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국세청) · 6

이달의 특집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 (국세청) 13

세무정보

- 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마세요 (국세청) 96

회계정보

- 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금융감독원) 113

경영정보

- 2024년 기술개발 1조 4,097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129

노무정보

-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
(고용노동부) 134
-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고용노동부) 135
- 부가세영세율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 · 재정 환율 (1월) 144

민감한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안세재경저널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작성일자

- 안세재경저널 2024/1/3일자 통권 1656호

수정발급사유	작성방법	작성일자	수정발급기한
재화의 환입	환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붉은색 글씨나 △표시)	실제 환입일	사유발생시 (다음달 10일까지)
계약의 해제	당초 발행금액에 (-)세금계산서 발급(붉은색 글씨나 △표시)	계약해제일	사유발생시 (다음달 10일까지)
계약의 해지	공급가액에 증감발생시 (+)나 (-)세금계산서 발급(검은색 글씨나 붉은색 글씨 등)	증감사유 발생일	사유발생시 (다음달 10일까지)
내국신용장의 사후개설	당초 발행분에 (-)세금계산서 발급(붉은색 글씨나 △표시)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검은색 글씨)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내국신용장 등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발급시
필요적 기재 사항의 착오기재	당초 발행분에 (-)세금계산서 발급(붉은색 글씨나 △표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 발급(검은색 글씨)		사유발생시 (다음달 10일까지)
필요적 기재 사항의 착오외 기재 변경			동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1년까지
착오이중발급	당초 발행분에 (-)세금계산서 발급(붉은색 글씨나 △표시)		사유발생시 (다음달 10일까지)

세율 잘못 적용	당초 발행분에 (-)세금계산서 발급 (붉은색 글씨나 △표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 발급(검은색 글씨)	사유발생시 (다음달 10일까지)
면세 등 발급대상 아닌 거래의 수정	당초 발행금액에 (-)세금계산서 발급(붉은색 글씨나 △표시)	사유발생시 (다음달 10일까지)

◎ 임원의 급여 상여금 보수와 퇴직금의 손금산입범위

- 안세재경저널 2024/1/10일자 통권 1657호

항목 구분	정관, 또는 주주총회 지급기준	이사회 결의로 손금산입범위
기본급여	보수총액 결정범위(지급기준)	정관범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정기상여금	보수총액 결정범위(지급기준)	결정된 금액은 손금산입함
성과상여금	보수총액 결정범위(변동계산식)	결정된 금액은 손금산입함
지배주주 임원 초과보수	동일직위범위내 금액은 손금산입,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동일직급 균등보수는 손금산입됨, 초과액은 손금부인
이익처분상여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임원보수지급규 정	결정가능범위 손금산입	범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비상근임원	부당행위부인의 손금산입	부당행위부인의 손금산입
퇴직금	정관이나 주총으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기준가능	이사회만으로는 지급규정 만들어도 손금부인 → 근로기준법상의 기본급(1년당 10% 손금산입)
임원퇴직 보험료	퇴직보험 운영 금융회사 납입금액 (정관)	퇴직보험료 정관규정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안세재경저널 2024/1/24일자 통권 1659호

기획재정부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총 1억원 공제(양가 합 2억원)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 중소기업 10% → 15% + 추가공제 15%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 100% 지배 → 90% 지배도 가능
-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가산율 조정 : 11% → 10%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 10% 세율구간 60억 → 120억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 업종변경 분류 : 중분류 → 대분류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 : 15% 미만인 경우만 추가납부
-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확대 : 가산세 한도 5천만원(비중소기업 1억원)
-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 현행 10억원 → 50억원으로 완화

고용노동부

-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

◎ 정치자금, 정당비, 정치인 후원회, 종교기부금의 세액공제 방법

- 안세재경저널 2024/1/31일자 통권 1660호

개념 구분	해당금액, 계산방법, 적용근거법(조특법 제76조), 지방세 10% 별도
정치자금 등	거주자의 정치자금법상 정당, 정치인 후원회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세액공제 등(조특법 제76조)
적용소득자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내국인) + 월급 등 연말정산자(근로소득자)

		등(연금소득은 해당안됨)
근로자	10만원 세액공제	연 10만원까지×100/110(국세) + 10/110(지방소득세) = 100% 세액공제
	초과액 세액공제	연 10만원 초과액×15%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액×25% 세액공제
	계산사례	3500만원 후원 : 세액공제 10만원 + 2990만×15% + 500만×25% = 5,835,000원×1.1 = 642만원
사업자	10만원 세액공제	사업이익에서 기부한 10만원×100/110(국세) + 10/110(지방세) = 100% 세액공제
	초과액은 손금산입	10만원 초과액은 전액 손금산입, 비용인정(최고 한계세율적용으로 세액감소)
	계산사례	3500만원 후원 : 세액공제 10만원 + 소득 1억 내의 한계세율 35%×3490만원(3490만원×35% = 1231만원×1.1) ÷ 1354만원
상기 이외의 비적법 정치자금	후원금 기부받은 조직이 상속세·증여세를 부담함	
종교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15%(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 한도 : 총소득의 10%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 국세청

□ '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4. 2. 13.(화)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4. 1. 18.(목)부터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올해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3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가 ARS 전화(☎1544-9944)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택스·손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는 '23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아래 개정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인상되었으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되었습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3일까지

□ '23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4. 2. 13.(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 (신고기한) 설 연휴(2.9.~2.12.)로 인해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규정에 따라 신고기한이 2.10.(토)에서 2.13.(화)로 3일 연장됩니다.

- (제출서류)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대상 업종 :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이달의 세무신고업무

- 국세청은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주택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18.(목)부터 발송합니다.
 - (골프장경기보조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등 신고지원을 위한 첫 단계로 용역제공자료*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골프장경기보조자에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합니다.
 - * 골프장 사업자가 매월 제출하는 자료 (용역제공자, 용역제공기간, 대가 등 기재)
 - (주택임대사업자)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안내대상입니다.
 - (안내방식) 모바일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발송 실패자에 한해 서면으로 재차 안내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자로 수신한 안내문 열람 시, 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문자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 안내문 열람 방법 : 참고 1

□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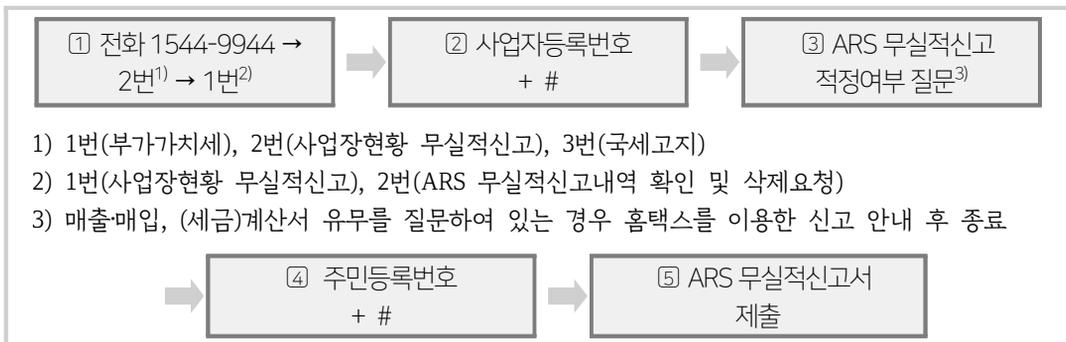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

※ 전자신고 가능 시간: 매일(공휴일 포함) 06:00 ~ 24:00

- (ARS 간편 무실적 신고)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홈택스·손택스 뿐만 아니라 ARS 전화*를 이용하여 무실적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ARS 무실적 신고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납세자에 한함

/ ARS 무실적 신고 방법 /



- (신고서 작성 지원)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



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자료실

2.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

① 신고도움 서비스

-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도움 서비스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공통 안내)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하고, 신고에 필요한 아래의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신고도움자료 제공 현황 |

제공자료 종류		제공내역
매출자료	신용카드 발급금액*	'23.1 ~ 11월까지의 발급금액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23.1 ~ 11월까지의 발급금액
	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	'23.1 ~ 9월까지의 매출금액
	제로페이 매출 자료*	'23.1 ~ 11월까지의 매출금액
	전자계산서 발급금액*	'23.1 ~ 11월까지의 발급금액
	주택매매업 부동산 양도 자료	'23.1 ~ 10월까지의 등기자료
	수출통관 자료	'23.1 ~ 10월까지의 통관자료
매입자료	캐디 용역제공내역 자료**	'23.1 ~ 10월까지의 용역제공금액
	전자계산서 수취금액*	'23.1 ~ 11월까지의 수취금액
	전자세금계산서 수취금액*	'23.1 ~ 11월까지의 수취금액

* 신용카드 발급금액 등 7개 항목은 '24. 1. 26.부터 '23년 연간자료 조회 가능

** 캐디 용역제공내역 자료는 '24. 2. 1.부터 '23년 연간자료 조회 가능

- (성실신고 안내)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자 중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현금 수입금액 신고비율 저조, 수입금액 과소신고, 비보험 비율 저조 의료업자 등



2. 미리채움 서비스

□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대상* 사업자 중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주택임대업자, 주택매매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 불러오기] 등 기능을 활용하여 「수입금액 검토표」를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작성대상 업종 :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수입금액 검토표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현황(업종별) |

구 분		제 공 항 목
의료업자	전년도 사업장시설	진료실 면적, 병상 수 등
학원사업자	전년도 사업장시설	강의실 수, 사무실, 책상 수 등
주택임대	전년도 임대명세 '23년 주택보유자료	소재지, 종류, 면적, 임차인
주택매매	부동산 양도자료	소재지, 면적, 양도가액

□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신고편의 제공을 위해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실시간 제공하여 수입금액 자동 작성을 지원합니다.

- 미리채움서비스에서 실시간 제공하는 용역제공자료는 용역제공 사업장(골프장)이 제출하여 전산 수록된 자료입니다.
- 조회시점 및 사업장 자료제출 여부에 따라 실제와 다르게 조회될 수 있으니 '23년 전체자료 조회가 가능한 2. 1.~2. 13.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홈택스/모바일) : 참고 5

3. '23년 귀속 세법 개정사항 및 신고 유의사항

□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가주택 기준)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 (간주임대료)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연 이자율이 2.9%로 상향('22년 귀속은 1.2%)되었습니다.
- (주택수 계산)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됩니다. (소득령 제8조의2 제3항 제2호)

-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 ②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¹⁾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²⁾와 공제금액³⁾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1) ①세무서·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②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 2) (필요경비)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
 - 3) (공제금액) 등록임대 4백만 원, 미등록임대 2백만 원

|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 세부담 비교 |

구 분	① 등록임대주택 (위 1) 요건을 모두 충족)	② 미등록임대주택 (① 이외의 경우)
총수입금액	2,000만원	2,000만원
필요경비 (-)	1,200만원 (60%)	1,000만원 (50%)
공제금액 (-)	400만원	200만원
과세표준 (=)	400만원	800만원
세율 (×)	14%	14%
산출세액 (=)	56만원	112만원

※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2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 소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다음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기한(2.13.)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3)
 -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2.13.)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0)
 - *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자, 신규사업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는 가산세 부과 제외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2)

□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무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



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3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 -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적용이자율 2.9%)
 - 과세대상: 월세 수입이 있는 1주택(고가주택¹⁾ 또는 국외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²⁾
 - 1)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 2) 소형주택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 (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임)
- ※ 과세요건(부부합산 보유주택 수 기준)

부부합산 주택 수	과세대상 ○	과세대상 ×
1주택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고가주택')의 월세 수입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월세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월세 수입 ✓ 다음 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소유&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

※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 사례

주 택 소유자	주택 보유 현황				간 주 임대료 대 상	비 고
	소형주택		비소형주택			
	주택수	보증금 합계	주택수	보증금 합계		
A	2채	4억 원	3채	5억 원	○	비소형주택 보증금 5억 원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 계산
B	-	-	2채	5억 원	×	비소형주택 3채 미만이므로 간주임대료 대상 아님
C	-	-	4채	3억 원	×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이나 보증금합계 3억 원 이하이므로 간주임대료 대상 아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

-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최근 세법 개정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확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23.7.1.이후 공급분부터) →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4.7.1.이후 공급분부터)
-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 인하 및 전송기한 연장) '19.1.1.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내 용	가산세율	내 용	가산세율
지연전송 가산세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 시	0.5%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시	0.3%
미전송 가산세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미전송 시	1%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시	0.5%

■ 전자계산서

-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확대)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3.7.1.이후 공급분부터) →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24.7.1.이후 공급분부터)
-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 인하 및 전송기한 연장)
 - 가산세 인하 : '19.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전송기한 연장 : '20.1.1.이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

구 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	변경 전		변경 후	
		내 용	가산세율	내 용	가산세율
지연전송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 시	0.5%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전송 시	0.3%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		0.1%		
미전송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미전송 시	1%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미전송 시	0.5%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		0.3%		

* '23.7.1.부터 1억원 이상, '24.7.1.부터는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구 분	공제대상자	공제금액	공제한도	적용기한
전자 세금계산서	직전 과·면세 공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 당 200원	연간 100만원	'22.7.1.이후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발급분부터
전자 계산서	직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	연간 100만원	'22.7.1.이후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발급분부터

* '23.7.1.이후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발급분부터 간이과세자도 적용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시 유의사항

▶ (홈택스 회원가입 필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 외 각종 세금신고 및 납부, 민

원증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회원가입은 필수

구 분	회원 가입 방법	인증서
개인사업자	① 혹은 ② 중 택일 ① 주민등록번호(개인)로 회원가입 후, 사업자 전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서비스 이용 가능 ② 사업자로 회원가입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서비스 이용 가능	발급단계 인증 시 공동인증서(전자세금계산서용 또는 사업자범용), 보안카드 중 하나 필요 * 금융기관용 공동인증서는 이용 불가
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	-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서비스 이용 가능	

▶ (부서사용자 ID 신청·이용)

홈택스에서는 하나의 ID로 회사 내 여러 명이 동시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 여러 명이 각자의 PC에서 동시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부서사용자 ID 신청·이용 권장

* 부서사용자 ID 신청·이용방법 : p213 참고

▶ (총괄납부 사업자 관리)

주사업자가 종사업자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종사업자가 주사업자에게 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 주사업자는 조회권한 동의된 종사업자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총괄납부 사업자 관리 : p200 참고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경우만 자료 전환이 가능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 관련사항 등*을 입력하면 국세청에 전송 사실 여부 확인 가능

*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승인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

1.	공동인증서 등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을 위해서는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 필요 ※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며 '21.2월부터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지문 인증 등을 통하여 발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단(공동인증서·보안카드·지문 등 생체인증) p11-14 참고
2.	회원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운영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 회원가입 ☞ 홈택스 회원가입 방법 p77 참고
3.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에 따라 생성(전자서명 필수)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p97 참고(전자계산서도 동일)
4.	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즉시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이메일 발송 및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 없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기한 p19 참고(전자계산서도 동일)
5.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별·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가능 ▶ 홈택스에서는 홈택스가 아닌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서 발급한 경우라도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방법 p174 참고(전자계산서도 동일)
6.	부가가치세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방법 p185 참고(전자계산서도 동일)

0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이해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 제도의 의의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전자서명)하고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

● 추진배경

① 납세협력비용 절감

-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 간의 거래가 복잡·다양화되고, 거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작성·보관 및 신고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절감 노력이 필요

②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 종전 종이세금계산서는 신고 직전 소급발급 등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적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
 - ▶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자료상 조기적발 등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③ 경제의 디지털화로 도입 여건 성숙

- 대기업을 중심으로 ERP¹⁾ 또는 ASP²⁾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

1)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 전사적 자원관리) : 기업 전체의 경영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구축한 통합정보시스템

2)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 세금계산서 발급 대행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한 중개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정의

① 전자세금계산서 개념

- 전자세금계산서(E-Tax Invoice)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¹으로 발급*²하는 세금계산서*³를 말함

***1 전자적 방법(附錄 第68조 ⑤)**

- ▶ 표준인증을 받은 ERP 및 ASP시스템을 이용한 발급(1·2호)
-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발급(3호)
-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4호)

***2 발급방법 및 시기**

- ▶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전달)
- ▶ 전달방법
 - 종이세금계산서 :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 전자세금계산서 : 통상 이메일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 ▶ 전달 완료시기
 - 종이세금계산서 : 우편물 등이 거래상대방에 도달(내용확인 불문)

- 전자세금계산서 : XML 원본파일(전자서명 포함)이 거래상대방 이메일에 도달(수신확인 불문)
- * 우편(이메일) 발송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되지 않는 경우 정당하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미발급에 해당

***3 세금계산서**

- ▶ 종이세금계산서 : 附則 제49조 별지14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세금계산서 자체
- ▶ 전자세금계산서 : 附則제50조 ①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된 XML파일 자체
- *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 등을 통해 반드시 XML파일 자체를 전달해야 함

②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에는 공동인증서와 세금계산서 작성내용을 특정한 함수로 암호화한 전자서명이 내재
- 전자세금계산서 법정서식은 XML파일 자체이며 전자세금계산서 작성화면 양식 또는 출력물은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
 - ▶ 단,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는 경우 승인번호 24자리와 '전자세금계산서' 표제를 표시하도록 하여 종이세금계산서와 구분 가능

③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

구분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면세)합계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24.7.1.부터는 8천만원 이상) 	공급가액(과·면세) 1억원 미만 개인사업자('24.7.1.부터는 8천만원 미만)
발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7조(공급시기)에 발급 •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발급 	좌 동
발급 및 보관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 보관의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로 발급 • 종이로 보관
발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 • 발급대행시스템(ERP, ASP)을 이용하여 발급 	수 동
수신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E-mail) 등으로 수신 	직접 또는 우편수신
전송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 	신고 시 합계표 제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2%(1%) • 미(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5%(0.3%) 	좌 동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생체인증(모바일)으로 전자서명 	실제인감(필수요건 아님)

● 전자세금계산서 표준화

① 표준화 필요성

- 사업자들이 구축한 다른 종류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ERP, ASP)간 세금계산서의 호환성 확보 및 검증방식 일원화를 위해 필요

② 표준화 대상

- (항목 등 파일형식) 영문명칭, 속성, 크기, 코드번호, 필요성 여부, 파일형식 등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항목에 대한 정의
- (전자서명) 전자세금계산서 위·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Digital Signature 방식으로 공동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 (전송방식)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형식으로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방식 채택

*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 자료실 > 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를 위한 개발지침, ② 전자세금계산서 표준화 인증을 위한 사용자 매뉴얼, ③ 전자세금계산서 서버인증서 공개키 참조

③ 승인번호 체계

- 승인번호는 작성연월일(8자리 숫자),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표준인증번호(국세청에서 8자리 부여), 발급 일련번호(숫자와 영어 소문자로 구성된 8자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자체 부여)로 구성
- 표준인증번호 8자리는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스템을 표시
 - 8자리 중 앞의 2자리 숫자는 홈택스 10, ARS 20, ASP 41, ERP 42,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50, 모바일 70, 세무서 대리발급 90으로 시작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附法 제32조 ②, 附승 제68조 ①)

-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2012.1월부터 발급의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 >

시행연월	내용
2010.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2011.1	법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2.1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4.7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9.7	직전 연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22.7	직전 연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23.7	직전 연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24.7	직전 연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 ▶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적용('23.7.1.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

기준연도	의무발급 기준금액	전자발급 의무기간	의무발급통지 기한
2020년	3억원	2021.7.1~2022.6.30.	2021.5.31.
2021년	2억원	2022.7.1~2023.6.30.	2022.5.31.
2022년	1억원	2023.7.1~ 계속	2023.5.31.
2023년	8천만원	2024.7.1~ 계속	2024.5.31.

☞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

- ▶ (수정신고 등)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 (예시) '22년 연간 공급가액(과면세)이 9천만원인 개인사업자 A가 '23.8월 공급가액(과면세) 3천만원 증액 수정신고 시 → '24.1.1.부터 계속하여 전자발급 의무 적용

✓ 주요상담사례

Q1. 계산서 발급의무 공급가액에 발급의무 면제금액 포함 여부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공급가액 기준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예)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세금계산서 발급대상)과 옥탕업(세금계산서 면제대상)을 겸업하는 경우 임대

업과 옥탕업 공급가액을 합하여 발급의무 기준금액 판단

Q2.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판정 기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연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모든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Q3. 고령의 대표자 1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의 및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고령자라는 사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Q4.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차이 여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발급방법이 다를 뿐 발급시기 등은 동일하므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종이세금계산서는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단

✓ 공동인증서

● 공동인증서 필요성

- 홈택스 로그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을 위해 공동인증서 필요
 -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에 대한 보안과 위변조 방지
- 공동인증서는 은행 또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방법 및 용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갱신은 모두 공동인증서 발급기관에서 가능하며 홈택스에서는 발급 및 갱신을 할 수 없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동인증서

- 발급가능 공동인증서 :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 * 금융기관용 공동인증서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홈택스 회원가입과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는 가능)

종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회원가입
전자세금계산서용	가 능	가 능	가 능
사업자 범용	가 능		
개인 범용	불 가		
ASP용	가 능		
금융기관용	불 가		

○ 공동인증서 구분

공동인증서의 구분은 공동인증서 선택란에 확인되는 [용도]에서 공동인증서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 보안카드는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조회할 수 있는 카드이며, 전화(ARS 126-1-2) 및 스마트폰을 통한 발급·조회에도 이용 가능(4자리로 구성된 30개 항목의 난수를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암호화 카드임)

● 보안카드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수령 가능
 - ▶ 보안카드 신청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여야 하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여야 함
 - ※ 법인이 신청할 경우 서식의 서명란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신청할 때는 대표자 신분증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신청,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별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 관할세무서가 아닌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발급 신청 가능
 - ▶ 보안카드는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연도별 갱신 없이 사용가능

● 보안카드 이용

-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인터넷, 모바일) 및 국세청 국세상담센터(ARS 126-1-2-1)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가능
 - * 국세청 홈페이지가 아닌 민간사이트에서는 보안카드 이용 불가

✓ 지문 등 생체인증

※ '21.2월부터 독자적인 사무실 또는 PC를 갖추지 못하는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환경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가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없이도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지문·얼굴(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간편하게 발급 가능

◎ 지문 등 생체인증을 통한 손택스 접속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손택스 앱에 지문·얼굴 최초 등록 시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에서 사용자정보(ID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 ▶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지문 등 생체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이후 지문 등 인증과 동시에 보안강화를 위한 복합인증으로 생년월일(8자리)을 입력하면 접속 가능
 - *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지문', 아이폰에서는 '얼굴(안면)' 인증 가능
 - ▶ 스마트폰으로 지문 등 생체인증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ID가 아닌 지문 등 생체인증 방법으로 로그인(접속)해야 함
- 지문·얼굴(안면) 인증 등 등록절차
 - ① 발급유형선택 ② 생체인증 발급 ③ 발급내역 확인
- 스마트폰(손택스 앱)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흐름
 - ① 생체인증 접속 방식 선택 ② 생체인증 등록 ③ 생체인증 접속

✓ 주요상담사례

Q1. 금융기관용공동인증서로전자(세금)계산서발급이안되는이유

- ▶ 금융기관용 공동인증서는 금융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금융기관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진행되더라도 발급완료에 위한 전자서명 단계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사업자범용 공동인증서, ASP용 공동인증서

Q2. 전자(세금)계산서발급시공동인증서가반드시있어야하나요?

- ▶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가 아닌 다른 민간 사이트에서는 보안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또한 '21.2월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가 없더라도 지문·얼굴(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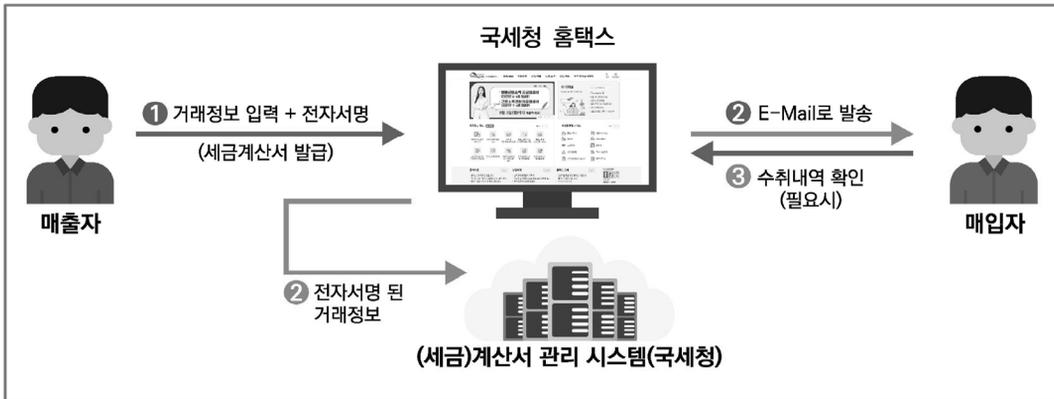
-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발급
- ② 자체 구축(ERP)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ASP)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 ③ 전화(ARS)를 이용한 발급, 세무서 대리발급(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발급(공동인증서 · 보안카드 · 지문 등 생체인증으로 발급)

○ 홈택스(www.hometax.go.kr) :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

-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2021년 2월부터는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가 없어도 지문 등 생체인증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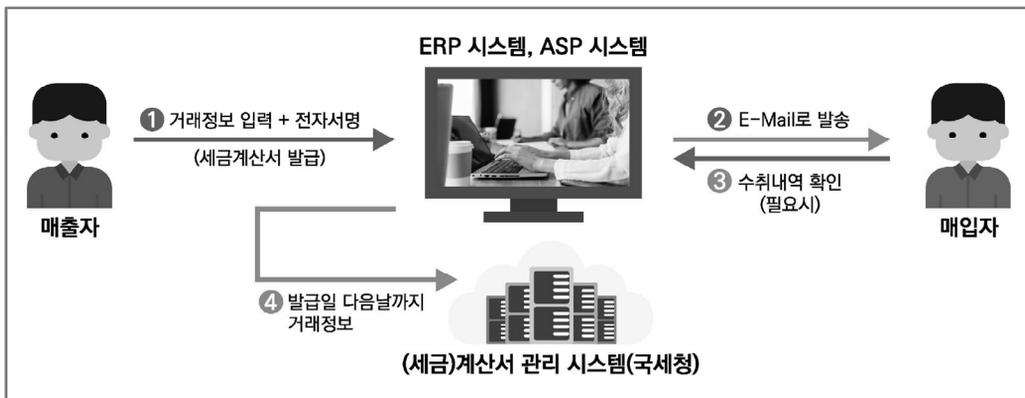
* 지문인증을 통한 발급은 개인사업자에 한하며 공급가액 1천만원 이하만 가능



* 발급건수가 적은 사업자들이 주로 이용,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에 자동 전송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ASP)의 시스템을 통한 발급(공동인증서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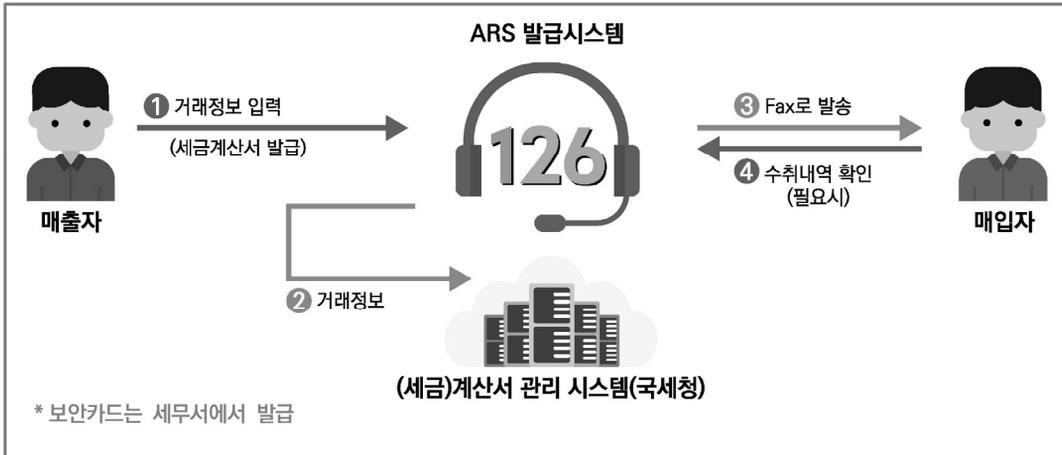
-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한 발급



* 자체구축(ERP) 또는 발급대행사업자(ASP)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 주로 규모가 큰 사업자들이 사용

③ 기타 발급 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 이용)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하여 전화ARS(☎:126-1-2-1)를 통해 발급



- (세무서 대리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를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통해 발급

*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등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주요상담사례

Q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채널

- ▶ 국세청이 구축하여 무료로 운영하는 홈택스, 표준인증을 받고 국세청에 등록된 민간 사업자의 ASP사이트나 자체 ERP 시스템 등에 접속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ARS 방식을 통해 발급하실 수 있으며,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청을 통해 발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Q2. ASP또는 발급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

- ▶ 공급자가 ASP나 ERP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그 전송분에 대하여 매출자·매입자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매출·매입처별 합계표 조회는 전송일 다음 날부터 가능)

Q3. 대리발급신청은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만가능한지

- ▶ 사업장 관할세무서와 관계없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계약서·입금증 등 거래증명을 첨부하면 세무서 직원이 직접 전자(세금)계산서를 대리 발급합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봄(附令 제68조 ②)
 ※ 민법이나 행정법에서는 수신자가 문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개봉여부에 불문하고 도달된 것으로 봄

- 파일 전송 없이 단순히 발급된 사실만을 알리는 SMS 통지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 ☞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 또는 홈택스에 입력된 때 발급완료
- 전자서명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파일을 거래상대방 이메일로 발송한 경우에는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 ☞ 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에 의해 생성된 파일이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에 도달한 때 발급 완료
- 거래상대방이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 또는 적용될 수 없는 경우
 - ☞ 매입자가 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봄(附令 제68조 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附法 제34조)
-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附法 제34조 ③)
 - *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附法 제32조 ③, 附令 제68조 ⑦)

6. 전자세금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시 혜택

- (신고간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 무 면제(附法 제54조 ②)
- (비용절감) 세금계산서를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송달·보관비용 절감(附法 제71조 ③ 단서)
 - (발급세액공제) '22.7.1.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발급분부터 건당 200원 적용(연간 1백만원 한도)
 - 대상자 : ①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②간이과세자('23.7.1.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발급분부터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적용
 - ('19.1.1. 이후 거래분)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미발급	2%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1%	0.5%
	종이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1%	해당없음
전송	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전송 예) '23. 5.10. 발급한 경우 '23.5.12.~'23.7.25.까지 전송	0.3%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미전송 예) '23. 5.10. 발급한 경우 '23.5.12.~'23.7.25.까지 미전송	0.5%	

*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附令 제75조 제7호)

- 단,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 0.5% 부과
- ('14.1.1.~'18.12.31. 거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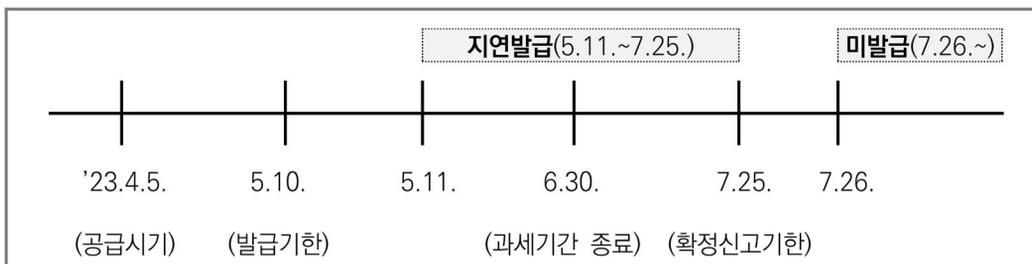
구 분		내 용	'14.1.1.~'16.12.31.		'17.1.1.~'18.12.31.	
			발급자	수취자	발급자	수취자
발급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¹⁾ 미발급	2%	매입세액 불공제 ²⁾	2%	매입세액 불공제 ²⁾
	지연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¹⁾ 발급	1%	1%	1%	0.5%
	종이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 계산서 발급	1% ('14년 2%)		1%	
전송	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 예) '17.1.4. 발급한 경우 '17.1.6.~'17.7.11.까지 전송	개인0.1% 법인0.5%	-	0.5%	-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미전송 예) '17.1.4. 발급한 경우 '17.1.6.~'17.7.11.까지 전송	개인0.3% 법인 1%		1%	

- 1) '16년 이전 거래분은 과세기간 내임(6월분과 12월분은 다음 달 10일까지임)
- 2) '16년 이전 거래분은 확정신고기한 내 수취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 가산세 1% 부과

◎ 가산세 사례별 검토

< 사례1 > (발급관련) 2023. 4. 5.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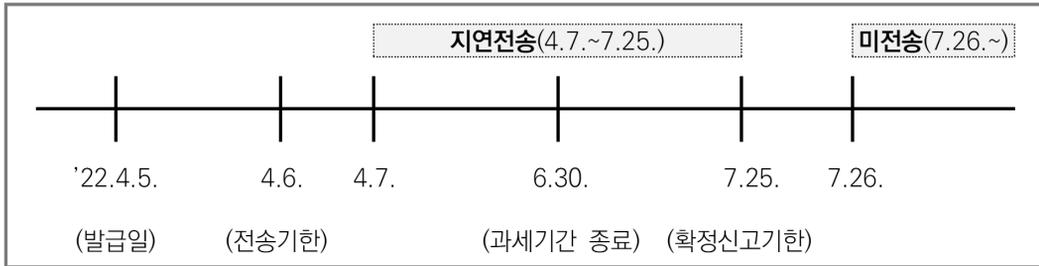
- ▶ 5.11.~ 7.25.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1%) 부과
- ▶ 7.26. 이후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가산세(2%) 부과



< 사례 2 > (전송관련) 2023. 4. 5.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 4.7.~ 7.25.에 전송한 경우 지연전송 가산세(0.3%) 부과

- ▶ 7.26. 이후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미전송 가산세(0.5%) 부과



✓ 주요상담사례

Q1. 작성일, 발급일, 전송일 구분

- ▶ 작성일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작성연월일로 거래일(공급시기)이며, 발급일은 전자서명을 완료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도달된 날이며, 전송일은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한 날입니다.

Q2. 전송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인정 여부

- ▶ 관련 법령 및 표준화된 형식으로 생성되지 않았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발급기한 내에 재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전송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매입자가 이메일 미확인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완료 여부

- ▶ 전자(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의 수신함(이메일)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된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된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수신 확인 또는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하시면 신고누락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Q4. 공급받는 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 ▶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급받는 자가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공급받는 자의 수신여부가 발급완료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청에 전송 후 거래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직접 출력하여 송부하여도 됩니다.

Q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6.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와 전송위반가산세의 중복적용 여부

-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지연전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7. 임대업 영위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신청·교부받은 법인사업자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Q8. 공급받는자를수정하여수정전자세금계산서발급시가산세부과

-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연발급(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재부 부가세제과-538, '14.9.5.)

7.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신고누락 점검

*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료 후, 전자세금계산서의 미(지연) 발급 및 미(지연)전송 관련 가산세 누락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므로 추후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가산세 부과금액 산출**

* 발급 관련 가산세는 홈택스에 수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세금계산서 기재액을 비교하여 미(지연)발급 금액 산출
 * 전송 관련 가산세는 홈택스에 수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에 대해 작성일자(공급시기)와 국세청 전송일자를 비교하여 미(지연)전송 금액 산출

- 미발급가산세
 - ▶ 가산세 대상금액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가액의 2%
 -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 대상금액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가산세 신고금액(신고서식 (64)번)
 - ▶ 가산세 부과금액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율(2%)

- 지연발급 가산세
 - ▶ 가산세 대상금액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가액의 1%
 -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 대상금액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가산세 신고금액(신고서식 (62)번)
 - ▶ 가산세 부과금액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율(1%)
- 미전송 가산세
 - ▶ 가산세 대상금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가액의 0.5%
 -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 대상금액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가산세 신고금액 (신고서식 (66)번)
 - ▶ 가산세 부과금액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율(0.5%)
- 지연전송 가산세
 - ▶ 가산세 대상금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가액의 0.3%
 -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 대상금액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가산세 신고금액(신고서식 (65)번)
 - ▶ 가산세 부과금액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율(0.3%)

※ 미(지연)발급 가산세 부과 시 전송 관련 가산세 중복부과 제외

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무(과소)신고 점검

※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료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세금계산서 매출액 기재액)을 비교하여 매출액 신고누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무(과소)신고액

구 분	내 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①	국세청 홈택스에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액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세금 계산서 매출액 ②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세금계산서 기재액(신고서 식 (1)+(5)+(33)+(35))
무(과소) 신고액 (①-②)	매출액 신고누락 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무(과소)신고 사례

※ 국세청 홈택스에 수록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내역을 대사하여 불일치 자료에 대한 매출액 신고누락 사례 등

- ▶ (사례1) 면세사업자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누락
- ▶ (사례2)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누락
- ▶ (사례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일부만 신고
- ▶ (사례4)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신고누락
- ▶ (사례5)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분 신고누락
- ▶ (사례6) 비영리단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신고누락
- ▶ (사례7)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발급분 신고누락
- ▶ (사례8) 공급자가 임의로 취소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신고누락

사례 1. 면세사업자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누락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학원에 연수원 임대료 하고 '22년 1월부터 매월 75백만원, '22년 1기 합계 450백만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인) '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231백만원만 신고하고 219백만원 신고누락
 - ☞ 공급받는 자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나 '23. 2. 8. 사업장 현황신고 시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자료를 대사하여 △△학원에 대한 임대료 신고누락 확인
-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사례 2. 공사금액을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였으나 신고누락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주)△△는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토목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공사대금 230백만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여 발급하였으나 신고누락
- (거래처 신고내역 확인) 거래상대방은 ◇◇기업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음
-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사례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일부만 신고(거래처 매입세액공제)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23년 1기 (주)○○테크 등 3개 업체에 제품매출 등 432백만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인) '2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경정내역·납부내역 등 확인한 바,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일부만 매출 신고
 - * (주)○○테크 외 1개 업체 367백만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누락
 - ☞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확인한 바, 공급받는 자는 전액 매입세액공제 받은

사실 확인

-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사례 4.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신고누락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거래처 ■■군청 "도민체육대회조경공사"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1건 129백만원 신고누락
 - '23. 6. 19. 정상 거래분에 대하여 처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23. 8. 28.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을 사유로 취소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2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누락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가액	비고	거래처
'23. 6. 19.	'23. 6. 19.	129백만원	누락	■■군청
'23. 6. 19.	'23. 8. 28.	-129백만원		(3xx-83-xxxxx)

-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사례 5.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분 신고누락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거래처 (주)○○뷰티 "건강식품" 외 10건 전자세금계산서 367백만원 신고누락
 - ☞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후 신고누락, 신고누락분에 대해 (주)○○뷰티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음

(단위 : 백만원)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가액	품 목	거래처	비고
'23. 4. 3.	'23. 5. 12.	216	건강식품	(주)○○뷰티	누락
'23. 5. 29.	'23. 7. 24.	27	건강식품		
	외 8	124			
(합계)		367			

-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사례 6. 비영리단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신고누락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체육회(30x-8x-xxxxxx) "행사대행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1건 100백만원 신고누락
 - ☞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이벤트 업체로 '23. 5. 8. 행사대행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국세청에 미전송하고 매출 신고누락

(단위 : 백만원)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가액	품 목	거래처	비고
'23. 5. 8.	'23. 5. 8.	100	행사대행	○○체육회	누락

- (거래처 신고내역 확인) ○○체육회(비영리법인)가 '23. 7.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해 이벤트업체와 거래사실 확인
-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사례 7.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발급분 신고누락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주) 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23.4.28.) 2장 117백만원(발급일자 '23.7.8.) 신고누락
-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인) □□(주)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확인한 바, '23.4.28.자 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경과 후 '23.7.8.에 발행하고 '2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 '23년 1기 매출누락 경정
-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사례 8. 공급자가 임의로 취소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후 신고누락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주)○○○는 "사출 성형기 외" △117백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수정 발급·전송
☞ (주)○○○은 수정발급 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취소로 경정청구 후 환급
- (거래처 매입세액 공제 확인) 거래처 (주)□□의 신고내역 확인한 바, 공급받는 자는 당초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받았으며, 공급자가 임의로 취소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확인
-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02 전자세금계산서 이해 확대

1. 매입자 중심의 발급형태와 해결책

◎ 정상발급과 매입자 중심 발급 비교

- (정상발급)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및 매출자의 공동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고 매입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발급하는 형태

- (매입자 중심 발급)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매출자에게 보내주고,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매출자의 공동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여 매입자에게 발급하는 형태

* 이런 발급 형태를 업계에서는 "역발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신청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제도)"와 혼동을 일으키는 등 올바른 표현은 아님

구분	기재사항 작성자	전자서명자	세금계산서 발급자	전송책임
정상적 발급	매출자	매출자	매출자	매출자
매입자 중심 발급	매입자	매출자	매출자	매출자

☞ 매입자 중심 발급의 경우 발급과정에 매입자가 관여하나, 세금계산서에 대한 최종 전자서명자는 매출자이므로 발급과 전송책임은 매출자에게 있음

◎ 발급채널 강요에 대한 해결방안

- 시스템사업자의 전용수신함 제도를 통해 사업자는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시스템에서 매출·매입 자료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매입자의 발급채널 강요 유도
 - ▶ 시스템사업자(ERP·ASP)는 홈택스에 전용수신함과 자신의 공동인증서 공개키를 등록하여 자료공유 및 변동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① 시스템사업자는 홈택스에 전용수신함과 자신의 공동인증서 공개키를 등록
- ② 거래 시 매출자는 매입자의 수신함과 매입자가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의 전용수신함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메일 발송
- ③ 시스템사업자는 자신의 전용수신함으로 수신된 세금계산서를 복호화하여 매입자 계정에 자동 반영

- * 자료공유 제도에 모든 사업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공유가 될 수 없으므로 시스템사업자(ERP·ASP)의 전용수신함과 공개키 등록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일정절차를 거쳐 등록취소 등 제재
- 발급채널 강요가 지속되는 경우 신고를 받아 행정지도 및 시스템사업자 등록취소 등 조치
 - ▶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당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강요당한 경우에는 「발급채널 부당강요 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 접수된 신고서는 행정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부당강요 신고가 10회 이상 제출된 경우 이행상황 점검 등을 실시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부당강요에 관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스템사업자 등록취소 등 조치

2.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 ASP, ERP 등 해당 사업자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국세청고시 등에 의해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

- 동 고시에 시스템사업자 등록절차 및 시스템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규정
-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1-53호, 2021.11.15.)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정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사업자(ERP 구축자, ASP사업자)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준용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절차

① 국세청 표준인증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스템(ERP, ASP)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고시(제2018-42호)에서 규정한 방법에 맞게 구축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표준적 합성 검증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아야 함

② 세무서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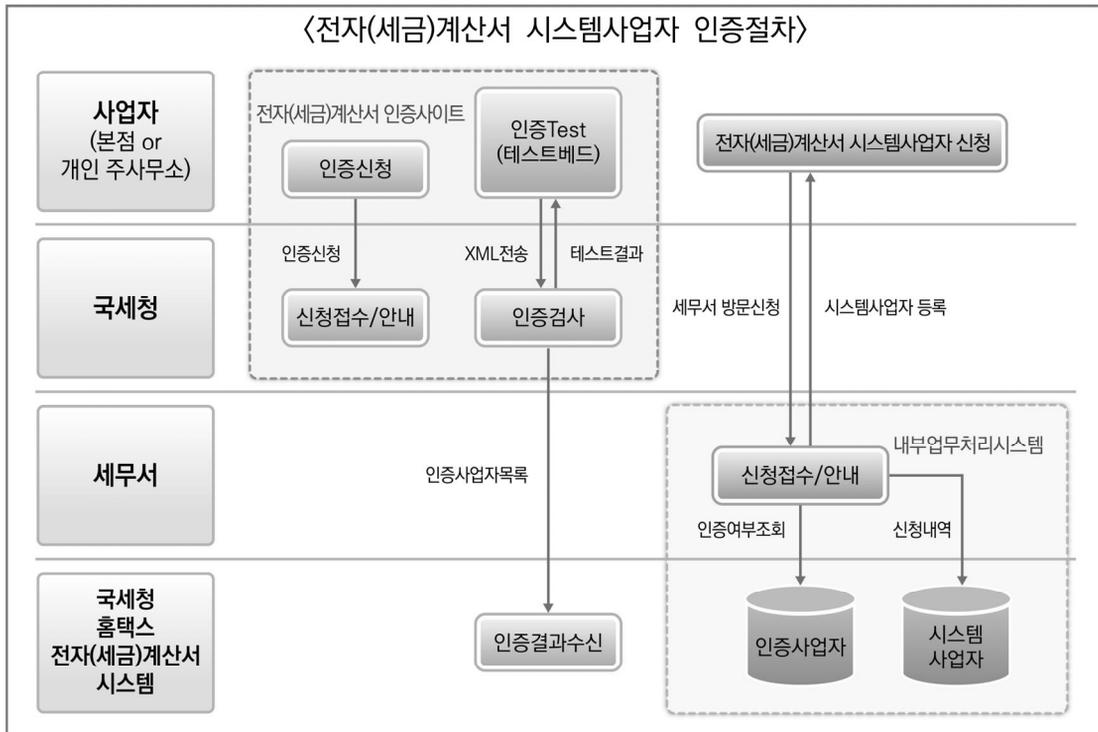
- 국세청 표준인증 후 국세청에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의 시스템만이 전자(세금)계산서발급 및 국세청 전송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인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23-17호, 2023.9.1.)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송 처리되며,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봄
 - ▶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시 암호화된 문서의 복호화 실패, 승인번호 및 전자서명 오류, 국세청 미등록 사업자 번호, 전송일·발급일·작성일 오류, 스키마오류 등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 ▶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이외의 다른 시스템에서 국세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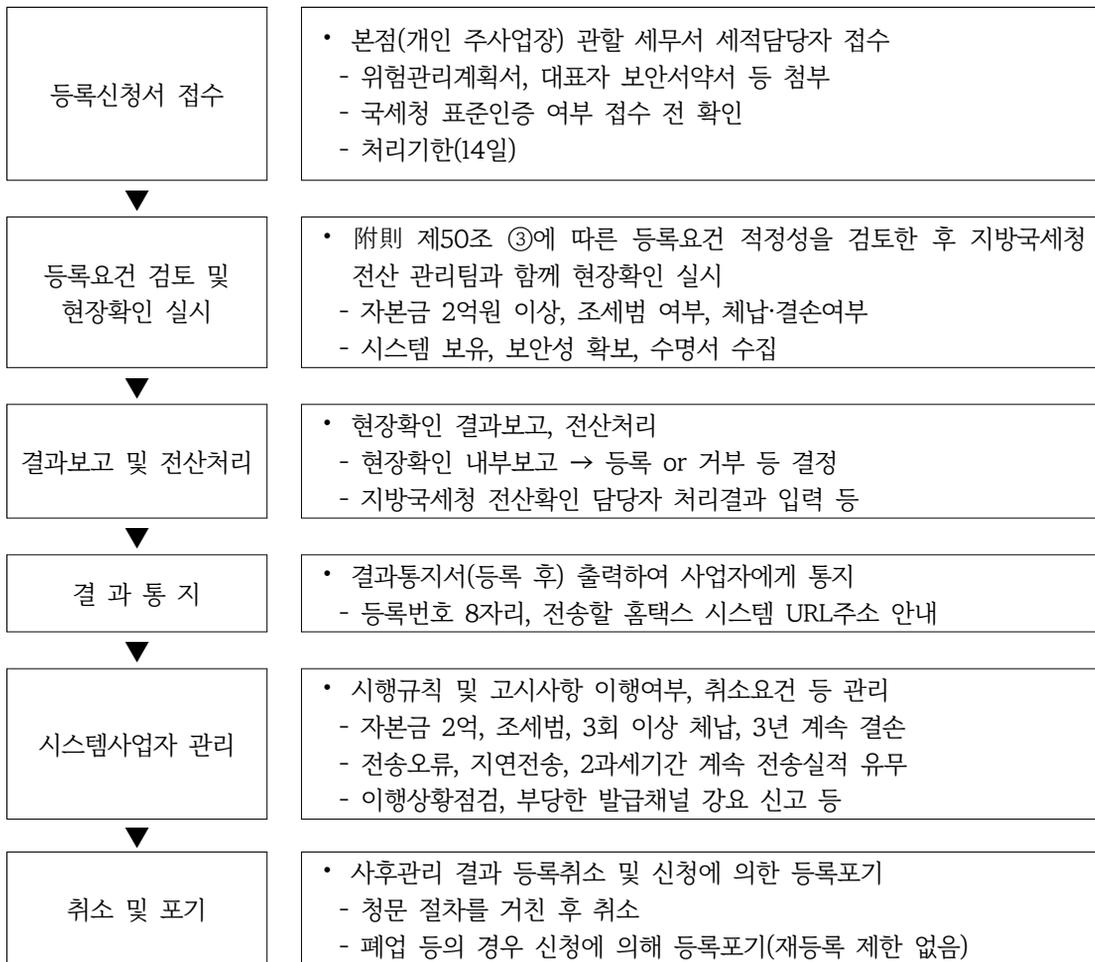
전송된 경우



-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반송된 경우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오류발생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하며, 반송된 오류자료의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등 오류자료 관리부를 작성·비치
- ② 이용자의 보호
 -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암호화 관리 등을 통하여 보안 관리를 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매입자 및 매출자에게 전자메일로 통보하는 경우 보안메일을 사용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세무공무원이 직무수행상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제공해야 함
- ③ 등록취소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록취소 가능
 - ▶ 국세청고시에 규정된 발급·전송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시스템 사업자간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유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 ▶ 동일 매입자에게 부당강요 신고가 10회 이상 제출된 경우로 이행상황점검 등 확인결과 시스템사업자가 부당강요에 관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별 전송건수의 10% 이상이 반송된 경우

- ▶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기한이 경과한 이후 국세청에 전송하여 사업자가 각종 세금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 제공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
- ▶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이행상황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이행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이행상황점검 결과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더 이상 등록을 유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2과세기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실적이 없는 경우
- ▶ 발급(국세청 미전송분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임의삭제, 수정, 파기 등을 하는 경우
- ▶ 폐업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운영업무를 종료했음에도 국세청고시에 규정에 따른 등록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업무처리 흐름도



3.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에 의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종이형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

● 도입배경

- 2010년부터 기존의 겸용서식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될 수 없어 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해야 하는 상황 발생으로 오히려 납세협력비용 증가

● 적용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전기, 전기통신, 도시가스, 열공급,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정절차에 따라 등록한 경우(附승 제68조 ⑨)
- (전자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所승 제211조 ⑥)
 - * 적용대상 사업부문 외의 겸용서식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제출방법

- 공급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전산매체로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직접 방문 제출 또는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제출

●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절차

- ① 국세청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생성 능력에 대한 표준인증 획득(표준인증번호는 50으로 시작)
- ② 적용대상 사업부문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

03.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요약

1. 세금계산서 개요

● **의의**

-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로 송장, 청구서(영수증), 증명서류, 과세자료 등 역할

● **발급의무자**

- (원칙)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영수증 발급대상(附令 제73조)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附令 제71조)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나, 附法 제36조 ① 개정으로 직전 연도의(환산)공급대가의 합계액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1.7월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
- (예외) 위탁판매 또는 공동매입의 경우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도 예외적으로 발급 가능(附令 제69조)
 - * 예) 집합건물, 아파트 상가 등에서 관리사무소와 전력공급계약이 이루어져 전기사업자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관리사무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관리사무소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전기요금 등을 실지로 부담하는 상가 입점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 필요적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발급 시 주의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임의적 기재사항	공급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등

* 종이세금계산서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자의 서명(일명 도장 날인)은 필수적 사항이 아니나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서명이 단순한 서명 뿐만 아니라 위·변조 확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에 반영된 필수 사항임

2.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 재화의 공급시기

가. 일반적 기준(附法 제15조)

-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동산) ☞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
-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건물, 권리)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 :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매입자가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공급자의 승낙 하에 매입자가 사용 개시
- ③ 인도되는 때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 각종 조건부 거래 등에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

나. 거래형태별 공급시기(附令 제28조)

- ① 현금·외상판매 및 할부판매 ☞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 할부판매 정의 :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 지급, 재화 인도일 다음 날로부터 최종 부분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
 - ②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약정일)
 - * 장기할부판매 정의 :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 지급, 재화 인도일 다음 날로부터 최종 부분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 ③ 반환·동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 기타 조건부 판매 ☞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 * 반환조건부 판매 : 일정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구입한 것으로 본다는 조건부 약정에 의해 공급(예 : 시용판매)
 - * 동의조건부 판매 : 거래상대방이 구매동의를 한 경우에만 구입한 것으로 본다는 약정에 의해 공급(예 : 검수 판매)
 - ④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기간이 6개월 이상 및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의 지급기준으로 판단(지급날짜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됨)
 - * 완성도기준지급의 경우 개월에 관계없이 완성도기준 지급조건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거래시기이나 반드시 기성청구 행위가 있어야 함
- 장기할부판매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비교

구분	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 조건부공급
기본개념	인도 후 대금회수	인도 전 대금회수
회수요건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	3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
기간요건	1년 이상	6개월 이상

- ⑤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공급시기 적용하
되, 위탁자 또는 본인을 모를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도 각각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 적용

● **용역의 공급시기 기준**

가. 일반적 기준(附法 제16조)

-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나. 거래형태별 공급시기(附令 제29조)

- ①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②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③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할 수 있음

3.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일반적 기준**

-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

●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

- ① 거래처별로 1억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附法 제34조 ③ 제1호)
* 11.~1.31.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31.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10.까지 발급
- ② 거래처별로 1억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
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附法 제34조 ③ 제2호)
* 11.~1.1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1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10.까지 발급
- ③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
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附法 제34조 ③ 제3호)

● **선발행 세금계산서 특례**

-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발급한 날을 공급시기
로 본다.(附法 제17조)

-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附法 제17조)
 - *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의미)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하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 (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 ▶ 발급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해 미래일자로 발급하는 것은 불가

4. 수정세금계산서

● 의의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 수정사유별 작성방법(附令 제70조)

①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 ▶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환입된 금액에 대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 *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덧붙여 적음
- ▶ 재화가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②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 *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덧붙여 적음
- ▶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③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④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에 개설된 경우

- ▶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정(+)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날 다음 달 10일 이내 발급

- ▶ (과세기간 경과 후 25일 이내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정(+)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발급
 - *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원칙이나 확정신고에 반영가능하며, 개설된 그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 발급
 - * 단,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기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⑥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 발급 가능,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 발급
 - * 단,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기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⑦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 ⑧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 ⑨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 발급
- ⑩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위 ①~③까지의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위 ①~③까지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 덧붙여 적음
- ⑪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위 ①~③까지의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위 ①~③까지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 덧붙여 적음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12.7.1.이후)

구 분		작성·발급방법			발급기한	
		방법	작성월일	비고란		
작성 일자 소급 안됨	환 입	환입 금액에 대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환입된 날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환입된 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계약의 해 제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계약해제일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계약해제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공급가액 변동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 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변동사유 발생일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작성 일자 소급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발급)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착오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외	-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 (개정) '22.2.15.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

구분	사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여부	사유
작성일자가 소급 안되는 경우	환입,계약해제, 공급가액변동	부	수정세금계산서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포함되므로 별도 수정신고 필요없음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	신고기한 내 수정사유 발생	부	신고기한 내 당초 및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합산신고하면 되므로 수정신고 필요 없음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사유 발생	여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합산신고할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해야함

✓ 주요상담사례

Q1. 발급·전송된전자세금계산서삭제나정정가능여부

거래상대방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삭제·폐기·정정이 불가능하며, 착오 기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시 당일에 한해 제공되는 '발급보류' 기능을 활용하시면 착오 기재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Q2.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면세 등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의 사유'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면 됩니다.

Q3. 계약의일부가해제된경우공급가액변동으로수정세금계산서발급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전부가 해제된 경우이며 일부 계약의 해제는 공급가액 변동으로 감액된 금액만큼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예) 처음에 10만원 재화공급 후 3만원 해제 시 → 3만원에 대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Q4. 대금을받지못한경우에도세금계산서취소불가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취소할 수 없습니다.

5. 합계표 작성방법

◎ 제출대상자와 제출시기(附法 제54조)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환급·예정·확정 신고 시 제출
 - *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 제출 가능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
 - ▶ 「면세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별로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제출

◎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방법

-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작성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란에는 합계금액만을 기재하고 거래처별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
 - ▶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란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2일 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적고 거래처별 개별명세 작성
-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고 작성
 - ▶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일지라도 발급자가 홈택스에 전송하지 않거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2일 이후 전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확인 후 신고
 - * 경로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합계표·통계조회】→ 【부가가치세 신고용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잘못 작성할 경우 불이익

- ①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종이세금계산서와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 예정신고기간)말의 다음 달 12일 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개별명세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

- ②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음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 단,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은 제외
- ③ 본인은 물론 정상적으로 신고한 거래상대방까지 오류자료로 출력되어 해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④ 조세범처벌법(제10조)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

- ▶ (매출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등
- ▶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등

✓ 주요상담사례

Q1. 합계표구분기재를잘못한경우의불이익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란에 적고 거래처별 명세를 제출해야 할 것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적고 거래처별 명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합계표 불성실)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Q2. 전자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전송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에 해당(2015.12.31.이전재화·용역거래분해당)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발급·전송일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이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경과되어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전송된 경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Q3. 전자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 내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2016.1.1.이후 재화·용역 거래분 해당)

발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2022.2.15.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 * 매입세액공제 받으면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

Q4. 전자세금계산서목록조회금액과합계표금액차이발생이유

당일 발급집계 금액이 다음 날 홈택스 합계표에 반영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 및 ASP·ERP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된 세금계산서는 전송 당일 목록조회는 가능하다, 합계표 금액은 당일 발급집계 금액이 다음 날 반영되어 차이가 발생합니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요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년 제 기 (월 일 ~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법인명)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⑤ 거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⑥ 작성일 년 월 일								
2. 매출세금계산서 총합계														
구 분	⑦매출 처수	⑧매수	⑨ 공급가액					⑩ 세 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합 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	사업자 등록번호 발급													
	주인등록번호 발급분	과세기간(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재					매수, 금액 등은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기재							
	소 계													
위 전자세금 계산서 외의 발급분	사업자 등록번호 발급분													
	주인등록번호 발급분	중이세금계산서와 과세기간(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재					매수, 금액 등은 3번 명세를 집계하여 기재							
	소 계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합계금액으로 적음)														
⑪번호	⑫ 사업자 등록번호	⑬ 상호 (법인명)	⑭매수	⑮ 공급가액					⑯ 세액					비 고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1														
2														
3	오류가 발생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기재													
4														
5														

⑰ 관리번호(매출)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요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년 제 기 (월 일 ~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법인명)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⑤ 거래기간						⑥ 작성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2.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구 분	⑦매출 처수	⑧매수	⑨ 공급가액					⑩ 세 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합 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 산서 발급받은분	사업자 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주민등록 번호 발급받은 분	과세기간(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재					매수, 금액 등은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기재					
	소 계											
위 전자세금계 산서 외의 발급받은분	사업자 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주민등록 번호 발급받은 분	중이세금계산서와 과세기간(또는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재					매수, 금액 등은 3번 명세를 집계하여 기재					
	소 계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만 적습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합계금액으로 적음)

⑪번호	⑫ 사업자 등록번호	⑬ 상호 (법인명)	⑭매수	⑮ 공급가액					⑯ 세액					비 고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1														
2														
3	오류가 발생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기재													
4														
5														

⑰ 관리번호(매출) -

04. 면세분 전자계산서 제도 이해

1. 계산서 개요

● **의의**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 121조에 따라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함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용역 >

법령	주요 면세대상 거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 수돗물, 연탄,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 의료보건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함), 혈액 - 교육용역(주무관청의 인허가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등) - 여객운송용역(항공기, 고속·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은 제외) -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등(광고는 제외) - 금융·보험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함)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함) - 저술가·작곡가 등 인적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함)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입장용역 등 -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함) -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리모델링 용역 포함) -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

● **발급의무자**

- (원칙)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예외) 발급의무자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所屬 제211조 ②)과 관련되는 경우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 ☞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영수증 발급가능 사업(所屬 제211조 제2항) >

구분	내용
1호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호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호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호	-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 계산서 기재사항(所屬 제211조 ①)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함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 계산서 발급시기(所屬 제212조 ②, 法屬 제164조 ①)

- 계산서 발급시기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규정을 준용함
 - (원칙) 건별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
 - (특례)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해당 월의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 * 계산서 발급 특례 기한(다음 달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전자계산서 발급 특례 사례

- ◎ (사례 1) '23.6.1. ~ '23.6.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23.6.3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3.7.10.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23.7.11.까지 전송
- ◎ (사례 2) '23.6.1. ~ '23.6.1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23.6.1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3.7.10.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23.7.11.까지 전송
- ◎ (사례 3) '23.6.1. ~ '23.6.25.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23.6.25.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3.7.10.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23.7.11.까지 전송

● 수정계산서 발급(所令 제212 ②)

- 계산서를 발급한 후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를 준용하여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 수정계산서 발급방법 : p126참조

● 계산서합계표 제출

- 사업자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2.10.까지 제출해야 함(所令 제212조 ①, 法令 제164조 ④)
 - 다만,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이 발급한 계산서나 국세청장에 전송한 전자계산서는 제출 생략
-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그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 공급가액의 0.5%(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시 0.3%) 가산세 부과(所法 제81조의10 ①, 法法 제75조8 ①)

2. 전자계산서 제도

● 도입배경

- 2013.4.1.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을 도입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으나, 전자계산서 발급과 전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자 선택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 2015.7.1. 이후 거래분부터는 사업자의 「발급여건, 납세편의, 면세거래의 투명성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음

● 추진배경

① 납세협력비용 절감

- 종이계산서 발급·송달·보관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절감 및 회계처리 편리성 제고
 - ▶ 세금계산서는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계산서는 종이로 발급하는데 따르는 불편 해소

②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비해 면세거래의 세원투명성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계산서도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토록 함
 - ▶ 무자료 거래 및 소급발급 관행 등을 사전에 차단

③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미 구축

- 2013.4월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그간 발급의무 사항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업

자가 전자발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발급·전송절차가 동일

3.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 **발급의무 대상자(所法 제163조 ①, 法法 제121조 ①)**

- 법인사업자는 2015.7월부터, 개인사업자는 2015.7월부터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공급가액(총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발급의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음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2015.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면세거래가 있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라는 의미
201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종전 직전 과세기간으로 할 경우 다음 연도 초에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여부를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
2019.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2.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3.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4.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총수입금액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면세사업' 영위에 따른 의무발급 여부는 아래와 같음.

구분	사업형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여부	내 용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구분 없음	○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 면세거래는 전자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함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만 영위	×	과세사업만 영위하므로 계산서 발급대상 면세거래가 없음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사업 겸업	○	직전 연도 과세 및 면세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 상인 경우 면세거래에 대해 발급의무 → '24.7.1.이후 8천만원 이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 영위	○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전 자계산서 발급의무 → '24.7.1.이후 8천만원 이상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라 하더라도 소매·음식업 등 영수증 발급가능 사업(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②)은 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나,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 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은 각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수입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 * 재화·용역 공급과 관련이 없는 이자배당·근로소득과 관련한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서면-2016-법령해석소득 -5987)
- 총수입금액 기준 발급의무 (단일사업장 가정)
 - 예) 2022년 총수입금액 기준이 1억원인 경우(2023.7.1. 이후 발급 시)

구분	총수입금액	과세공급가액	면세수입금액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	1억원	0억원	1억원	발급의무○(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
사례2	1억원	1억원	0억원	발급의무○(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
사례3	1억원	0.5억원	0.5억원	발급의무○(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
사례4	0.5억원	0억원	0.5억원	발급의무×(총수입금액 1억원 미만)
사례5	0.5억원	0.5억원	0억원	발급의무×(총수입금액 1억원 미만)
사례6	0.5억원	0.25억원	0.25억원	발급의무×(총수입금액 1억원 미만)

- 예) 2023년 총수입금액 기준이 8천만원인 경우(2024.7.1. 이후 발급 시)

구분	총수입금액	과세공급가액	면세수입금액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	0.8억원	0억원	0.8억원	발급의무○(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
사례2	0.8억원	0.8억원	0억원	발급의무○(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
사례3	0.8억원	0.4억원	0.4억원	발급의무○(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

사례4	0.5억원	0억원	0.5억원	발급의무*(총수입금액 8천만원 미만)
사례5	0.5억원	0.5억원	0억원	발급의무*(총수입금액 8천만원 미만)
사례6	0.5억원	0.25억원	0.25억원	발급의무*(총수입금액 8천만원 미만)

○ 사업장 기준 발급의무

- A, B 사업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갑의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수입금액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사업장 수입금액은 모두 면세수입금액으로 가정)
- 예) 총수입금액 기준이 1억원인 경우

구분	계	A사업장	B사업장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	7억원	4억원	3억원	A사업장, B사업장 발급의무 ○
사례2	3.5억원	3억원	0.5억원	A사업장 발급의무 ○, B사업장 발급의무 ×
사례3	1.5억원	0.9억원	0.6억원	A사업장, B사업장 발급의무 ×

- 예) 총수입금액 기준이 8천만원인 경우

구분	계	A사업장	B사업장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	2억원	1억원	1억원	A사업장, B사업장 발급의무 ○
사례2	1.5억원	1억원	0.5억원	A사업장 발급의무 ○, B사업장 발급의무 ×
사례3	0.9억원	0.5억원	0.4억원	A사업장, B사업장 발급의무 ×

4. 전자계산서 발급과 전송기한

● 전자계산서(所則 제96조의3)

-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되어야 함

● 전자계산서 발급시기(所令 제211조의2 ⑥, 法令 제164조 ①)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봄
- 공급받는 자가 전자계산서를 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 전자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봄

● 전자계산서 발급기한(所令 제212조 ②, 法令 제164조 ①)

- 원칙적으로 계산서도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

- 다만, 월합계 계산서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 계산서 발급 특례 기한(다음 달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 전자계산서 전송기한(所令 제211조의2 ④, 法令 제164조 ⑤)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所令 제211조의2 ⑤)				
1.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		5. 기타 참고사항	

5. 전자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시 혜택

- ① (지출증명 보관 의무 면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 전송한 경우 증명서류 보관의무 면제(所令 제208조의2 ⑤, 法令 제158조 ⑤)
- ② (신고간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작성 불필요(所法 제163조 ⑤, 法令 제121조 ⑤)
- ③ (발급세액공제) '22.7.1.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발급분부터 건당 200원 적용(연간 1백만원 한도)
- 대상자 :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전자계산서 가산세('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가산세 부과

구분	내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사실과 다름	•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1%	-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미발급	2%	-
	지연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	1%	-

	허위 등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공급받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2%	2%
	종이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1%(16년 이후)	
전송	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연도별·사업자별로 다름 (하단표 참조)	-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미전송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所法 제81조의10 및 所令 제147조의6)
- * 가산세 부과한도 :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국세기본법 제49조)
-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 미지연전송 기한연장 적용시기는 '20.1.1. 이후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
- 종이발급, 지연(미) 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연도별로 아래 가산세율 적용
 - ▶ 종이계산서를 발급해도 계산서 발급시기는 준수해야 함

< 전송 의무위반별 연도별 가산세율 >

구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	2016	2017	2018	2019
종이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1%	1%	1%	1%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	-	1%	1%	1%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0.1%	0.5%	0.5%	0.3%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	-	0.1%	0.1%	0.3%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0.3%	1%	1%	0.5%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	-	0.3%	0.3%	0.5%

* 직전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은 '23.7.1.부터 적용되며, '24.7.1.부터는 8천만원 이상으로 변경됨

● 지연전송, 미전송 구분

구분	지연전송	미전송
개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25일 까지 전송한 경우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25일 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말의 다음 달 25일 까지 전송한 경우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말의 다음 달 25일 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	---	--

- * 법령근거 : (개인) 소득세법 제81조의10 ①5,6호, (법인) 법인세법 제75조의8 ①5,6호
- 개인의 과세기간은 1.1.~12.31.이며,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 회계기간으로 개인과 법인의 미(지연)전송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예시
①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A가 '22.3.10. 전자계산서 발급 → '22.3.12. ~'23.1.25.까지는 지연전송이 되며, '23.1.26 이후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미 전송이 됨 ② 법인사업자(사업연도 '22.7.1.~'23.6.30.) B가 '22.8.3. 전자계산서 발급 → '22.8.5. ~'23.7.25.까지는 지연전송이 되며, '23.7.26. 이후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미 전송이 됨

6.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所法 제163조 ⑤, 法法 제121조 ⑤)

-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매년 2.10.까지 제출
- 다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거나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합계표 제출 생략

● 계산서합계표 작성방법

- 전자계산서와 종이계산서를 구분하여 작성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발급분(발급받은 분)란에는 「매출처(매입처)수, 매수, 매출(매입) 합계금액」을 기재하고 매출처별(매입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 ▶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분(발급받은 분)란"에는 종이로 발급한(발급받은) 계산서, 전자적으로 발급하였으나 그 개별명세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매입처)수, 매수, 매출(매입) 합계금액」을 기재하고 매출(매입)처별 명세 작성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 내역을 확인하고 작성
 - ▶ 전자적으로 발급한 계산서일지라도 발급자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거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2일 이후 전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후 신고
 - * 경로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합계표·통계조회】→ 【부가가치세 신고용 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 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구 분		내 용	가산세율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다음 연도 2.10.)까지 미제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0.5%
	지연제출	• 상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다음연도 2.10.)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 계표	미제출	• 「사업장현황 신고대상 개인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법인」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다음연도 2.10.)까지 미제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0.5%
	지연제출	• 상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다음연도 2.10.)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3%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 가산세 부과한도 :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의무위반은 가산세 한도 없음
(법인세·소득세) '18.1.1.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17.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 과세기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업종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7. 부가가치세법 관련 법령 준용

◎ 계산서의 작성·교부, 계산서합계표 제출

-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은 아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을 준용 (所令 제212조 ②, 法令 제164조 ①)

관련 법령		주요 내용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기재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건별, 월합계 발급 등)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제9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제98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99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등

- 아래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서로 봄(所令 제211조의2 ⑥, 法令 제164조 ①)
 - ▶ 전자계산서 발급방법(ERP 및 ASP시스템, 국세청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
 - ▶ 전자계산서 발급시기, 발급기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 ▶ 전자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적용대상 및 방법, 등록절차)
 - ▶ 전자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제출서류, 등록취소 사유 등

05. 주요상담사례(Q&A)

① 발급대상자와 방법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4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2022년 7월부터는 직전 연도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되었으며, 2023년 7월부터는 1억원 이상, 2024년 7월부터는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의무발급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2. 개인사업자의 공급가액 판단기준 및 발급의무 기간은?

-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23.7.1.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인사업자 전자발급 의무기간>

기준연도	기준금액	전자발급 의무기간	전자발급* 의무통지
2020년	과세+면세 3억원이상	2021.7.1.-2022.6.30.	2021. 5. 31.
2021년	과세+면세 2억원이상	2022.7.1.-2023.6.30.	2022. 5. 31.
2022년	과세+면세 1억원이상	2023.7.1.-계속	2023. 5. 31.
2023년	과세+면세 8천만원이상	2023.7.1.-계속	2024. 5. 31.

* 2018.11.이후 통지하는 분부터는 전자발급 의무통지 기한까지 납세자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발급의무가 개시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준비사항은 무엇인가요?

① 거래하시는 은행 등을 통해 사업자비용·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 또는 전화 ARS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부터 손택스(모바일 앱)를 활용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없이도 지문 등 생체정보 인증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②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대신 이메일로 발송되므로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며, 매입자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발급대행사업자(ERP, ASP)를 통한 발급, 전화 ARS를 이용한 발급, 세무서에 발급신청을 통한 대리발급이 있습니다.
 - ①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에서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발급하는 방법
 - * 국세청 홈택스(PC) 외 손택스(모바일 앱)를 활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② 시스템사업자(ERP, ASP) : 표준인증을 받고 국세청에 등록된 민간 사업자의 ERP시스템이나 ASP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발급하는 방법
 - ③ 전화 ARS 방식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국번 없이 126-1-2-1번을 눌러 전화로 발급하는 방법
 - ④ 세무서 대리발급 : 거래관련 증명서류(거래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등)을 지참하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

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 기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사업의 공급가액이 포함되나요?

-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 기준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법규과-1101, 2013.10.10.)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 노점, 행사, 소매업, 미용, 옥탕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경우

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인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 드리며, 홈택스[My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 대상자 확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7. 임대인이 실제 전력을 사용한 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포함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발급과 전송시기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제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전송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대체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전송)

예) 2023.9.1.(금) 발급한 경우	'23.9.4.(월)까지 전송(9.2.은 토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로顺延)	정상
	'23.9.5. ~ '24.1.25.까지 전송	지연 전송
	'24.1.26. 이후 전송	미전송

3.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에 차이가 있나요?

-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발급방법이 다를 뿐 발급시기 등은 동일하므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경우 발급 후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송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된 건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관련법령 및 표준화된 형식으로 생성되지 않았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 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발급기한 내에 재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전송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혜택과 가산세

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경우의 혜택은?

-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합계표 작성) 시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22.7월 이후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건당 2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1백만원 한도, 직전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23.7.1. 이후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발급분부터 간이과세자도 적용)

2.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미전송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미발급	2%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1%	0.5%
	종이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1%	해당없음
전송	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내 전송 예) 23.5.10. 발급한 경우 23.5.12.-23.7.25.까지 전송	0.3%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 신고기한 내 미전송 예) 23.5.10. 발급한 경우 23.5.12.-23.7.25.까지 미전송	0.5%	

* 가산세 부과한도 :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의무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 2019.2.12.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1)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p20참고)

1) '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3.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법에 정한 사유에 의한 정상적인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거짓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 등은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신청을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 1기 확정신고 시 발급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이를 2기 신고분에 반영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④ 전자세금계산서와 공동인증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에 대한 보안과 전자세금계산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다만,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다른 민간사이트에서는 보안카드 이용 불가)
- 또한, 2021년 2월부터 스마트폰(손택스 앱)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가 없더라도 지문 등 생체정보 인증을 통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가능한 공동인증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사업자범용 공동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가 있습니다.
- 사업자범용 공동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는 홈택스를 포함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이 있는 모든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증기관이 민간사이트와 계약을 통해 발급하는 ASP용 공동인증서는 계약된 사이트에서만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인증기관이 해당 공동인증서를 홈택스 적용 신청하는 경우 홈택스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공동인증서는 거래하시는 은행 또는 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방법 및 용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은행 또는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은행을 통하여 금융결제원에서 발급받는 방법

① 기업 인터넷뱅킹이 신청되어 있는 경우

- 거래은행 홈페이지에 기업고객으로 접속하여 [인증센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발급

② 기업 인터넷뱅킹이 신청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기업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신청 후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발급(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시 해당 은행에 별도 문의)

4. 금융용 또는 개인 범용 공동인증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금융용 공동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단,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는 가능)
- 금융용 공동인증서는 금융결제원 인증업무 준칙에 금융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사업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공동인증서는 사업장별로 있어야 하나요?

- 공동인증서는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별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공동대표자가 개별적으로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6. 총괄납부사업자는 지점도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여러 개의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별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총괄납부사업자는 납부만 총괄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로 발급·관리하여야 합니다.

7. 공동인증서 복사는 어떻게 하나요?

- 공동인증서 복사는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사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공인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백업·복구] 메뉴의 인증기관 홈페이지 주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는 무엇인가요?

- 공동인증서가 없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용 보안카드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인증이 비활성화된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9. 홈택스 로그인할 때 사용한 공동인증서가 발급단계 인증 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홈택스에 로그인 할 때는 여러 종류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시에는 발급가능한 공동인증서만 보여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공동인증서(전자세금계산서용, 사업자비용)를 이용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10. 새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추가로 등록하는 방법은?

- 홈택스 [공인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등록]을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으로 회원가입이 된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등록이 불가하며, 등록을 원하는 경우 [사업자·세무대리인]으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등록은 로그인을 위한 등록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는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11. 사업자단위과세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종사업자별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예,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종사업장의 홈택스 부서사용자 ID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종사업장별로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

1. 전자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에 의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의해 생성·발급·전송된 파일을 말합니다.

* 제정된 표준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전자서명을 하게 되어 있으며 전자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달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님

- 시스템사업자를 통해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표준에 맞지 않게 생성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표준에 맞게 생성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홈택스에 전송될 경우 오류로 반송하게 됩니다.

2. 작성일, 발급일, 전송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작성일은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작성연월일로 거래일(공급시기)이며, 발급일은 전자서명을 완료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도달된 날이며, 전송일은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한 날입니다.

3. 공급받는 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완료 시점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입력된 때이나, 공급받는 자가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홈택스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바로 국세청에 전송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매입자의 수신확인(승인) 여부가 발급완료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홈택스 전송 후 거래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직접 출력하여 송부 가능

4.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인가요?

- 전자세금계산서가 매입자의 수신함(이메일)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된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된 것이므로, 매입자의 이메일 수신확인 및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 다만,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하시면 신고누락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미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과세기간 임의조절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급시기 도래 전 미래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도 당초 발급일 다음 날 이후 미래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1) 5월 5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작성연월일을 미래일자인 5월 6일 이후로 발급할 수 없음

예2) 작성일자 기재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발급일(5월 5일)보다 미래일자로 발급할 수는 없음(5월 5일 이전으로는 수정발급 가능함)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가능하나요?

- 발급이 불가합니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법정 절차에 따라 매입자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전송대상이 아닙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간혹 역발행 세금계산서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매입자의 시스템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와는 다른 것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7.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전송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 수탁자 공동인증서로 위탁자 명의로 발급·전송하면 됩니다.
- 위·수탁의 법률적 성격으로 인해 전송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8.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서식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 및 개발지침 v1.0」에 의해 생성되는 파일 자체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며, 전자세금계산서 작성화면 양식 또는 출력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9.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구별합니다.(전자분만 조회됨)
-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출력물의 표제가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으며, 종이세금계산서에 없는 승인번호(영어와 숫자 24자리)가 있습니다.

-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⑥ 수정세금계산서

1.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취소 할 수 있나요?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삭제·폐기·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착오 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 시 '발급보류' 기능(발급 전에 매입자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매입자에게 메일로 전송하여 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착오 기재로 인해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기재사항 착오정정

* 당초 2023년 1월 7일에 공급가액 1,000원인 세금계산서를 100원으로 착오발급하고 2023년 3월 3일에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1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이에 추가하여 정확한 1,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작성일자인 2023년 1월 7일로 하여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없음(단,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별도 판단)

* 단,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기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3. 일반세금계산서를 (-)나 '0'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능합니다.
- 당해 업체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전체거래를 합계하여 발급할 수 있으므로 (-)나 '0'으로 발급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수정발급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금액의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불이익이 있나요?

- 경우에 따라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당초 발급한 거래와는 별개의 거래로 인식될 수 있어 추후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기 전에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의무 이후에 수정세금계산

서를 발급할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 귀속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작성일이 발급의무 시점 전으로 소급되는 경우(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 작성일이 발급의무 시점 이후인 경우(공급가액 변동, 재화의 환입 등)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예) 2023년 7월 1일부터 발급 의무자인 경우,

- 1) 2023년 6월분 거래(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 2023년 7월에 착오기재를 발견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종이, 전자세금계산서 모두 가능
- 2) 2023년 6월 거래(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가 2023년 7월에 반품된 경우 '재화의 환입'을 사유로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6.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사유에 따라 발급하는 것이며, 대가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아닙니다.
-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발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7. 세금계산서의 내용 중 매입자 상호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 매입자 상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매입자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번호 이외의 사항(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매입자는 정상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을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8. 공급가액 변동 후 계약해제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각 변동사유가 발생한 금액만큼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예) 1월 1일에 공급가액 100,000원 매출, 2월 1일에 공급가액 감소하여 (-)20,000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3월 1일에 당초 계약 해제된 경우 차액 (-)8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작성일자 3월 1일) 발급

☞ (-)10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닌 것에 주의

9.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나요?

○ 가능합니다.

예) 당초분 공급가액 1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재화의 환입으로 (-)2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내용이 잘못 기재(실제로는 (-)30,000원 환입)된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취소분 (+)20,000원과 올바른 수정세금계산서 (-)30,000원 발급

10.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단,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나 작성일이 소급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11. 폐업 전 지점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자가 반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재화의 환입'을 사유로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예) 지점(공급자)이 7월 5일 재화 공급 후 세금계산서 발급한 건에 대해 7월 31일 지점이 폐업하고, 8월 15일에 매입자가 반품한 경우 '재화의 환입'을 사유로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과-476(2009.04.07.), 법규과-839(2009.06.23.)]

* 환입 : 출고(반출)된 재화가 다시 들어오는 것(반품)

12.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수정발급시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경우"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이 일부 차감되는 경우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계약해지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

- 계약의 해제 : 계약성립 후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처음의 상태(계약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임

- 계약의 해지 : 계속적 계약에 있어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지 이전의 계약관계는 그 효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처음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계약해제와는 다른 것임

14. 영세율 매출분에 대해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착오로 발급한 전자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발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서삼46015-12005, 2003.12.22.)

15. 공급가액을 변경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당초 발급 전에 대하여 공급가액이 틀리지 않았고, 실거래 전에 대하여 증감사유(매출할인, 단가 변동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가액변동] 의 수정사유를 선택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 당초 발급 전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착오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 변동] 이 아닌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의 수정사유를 선택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1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해야 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08 P鍾 발급 후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는 수정발급대상이 아닙니다.

17.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습니다.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그러면 이중매출 아닌가요?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후 그 대가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의 사유로 수정발급 하여야 합니다.

18. 5월 거래된 금액의 일부를 공급받는 자의 요청으로 7월에 할인을 해주었습니다. 할인 금액을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또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할인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되나요?

- 당초 금액에 대해 매출할인 등의 공급가액 변동사유가 발생된 경우 [공급가액 변동]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공급시기는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이므로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고 공급가액이 변동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5월 거래 건은 7월(1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7월에 발생한 할인금액은 7월 매출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음 해 1월(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면 됩니다.

19. '23.6.26. 공급한 재화가 '23.7.14. 일부 반품이 되어 '23.8.10.에 [환입]으로 수정발급하면서 작성일자를 당초 재화 공급일인 '23.6.26.로 발급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환입]이 된 경우 공급시기는 환입된 날이므로 작성일자는 '23.7.1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당초 재화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수정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 오류로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수정발급 하여야 합니다.
- [환입] 수정발급 건을 선택하여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를 선택하면 전액(+) 자동 발급, 하단의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을 '23.7.14.로 작성, 환입된 금액만큼(-)로 발급합니다.
- 공급시기가 7월이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거래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 하면 됩니다.

20. 수출 품목을 공급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았지만 수출이 확실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수정 발급해야 하나요?

- 내국신용장 개설 전 재화의 공급은 과세거래 건이므로 일반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당초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전액(-) 발급 후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 종류를 [일반]으로 체크 후 올바른 내용으로 기재하여 수정발급 하여야 합니다.

7 기타

1.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란에 총합계로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으며,
-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2일부터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합계표상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란에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합계표 구분기재를 잘못된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란에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해야 할 것을 '과세 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란에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매입자로부터 발급방법을 부당하게 강요당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 「발급채널 부당강요 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당강요 신고가 10회 이상 제출된 경우로 이행상황점검 등을 확인한 결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부당강요에 관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매입자 중심 발급(역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전송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의 법적인 발급·전송책임은 모두 매출자에게 해당됩니다.
- 매출자가 자신의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사업자들은 이것을 승인이라 함)을 해야 전자세금계산서가 완성되므로 매출자가 발급한 것입니다. 발급과정에서 매입자가 내용을 작성했을 뿐입니다.
- 전송은 매입자의 발급시스템에서 하여야 하므로, 매출자는 전송하지 않은 데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 관리하여야 합니다.

5.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어떤 업종이 해당되나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9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지로영수증에 세금계산서 기능을 같이 사용하는 전기·전기통신·도시가스·집단에너지 공급·방송 사업부문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한해 기존 겸용서식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정하되 동 사업부문 사업자는 국세청장에게 전산매체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에 대해 지연발급·전송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 전자서명이 늦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은 이미 종이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표준화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생성시키기 위해 전자서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을 공급시기에 발급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전산매체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생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전송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⑧ 전자계산서(면세) 제도

1.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하는 대상 사업자는?

- 법인사업자는 2015년 7월부터 의무발급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며, 개인사업자는 공급가액(총수입금액)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급의무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2015.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면세거래가 있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라는 의미임
201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종전 직전 과세기간으로 할 경우 다음 연도 초에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여부를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
2019.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2.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3.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4.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 총수입금액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
- 또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면세사업' 영위에 따른 의무발급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사업형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여부	내 용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구분 없음	○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 면세거래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해야 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만 영위	×	과세사업만 영위하므로 계산서 발급 대상 면세거래가 없음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사업 겸업	○	직전 연도 과세 및 면세공급가액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면세거래에 대해 발급의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 영위	○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소득세법 시행령 §211 ②)은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영수증 발급가능 사업(소득세법 시행령 §211 ②) >

구 분	내 용
1호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호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호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호	-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 직전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은 인별 또는 사업장별로 계산하는지?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총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2)
 - 계산서는 재화·공급과 관련한 수입금액에 대해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자·배당·근로소득과 관련한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 (예시) 복수 사업장(A,B)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갑의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수입금액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총수입금액 기준이 1억원인 경우)

(사업장별 수입금액은 모두 면세수입금액으로 가정)

구분	계	A사업장	B사업장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	7억원	4억원	3억원	A사업장, B사업장 발급의무 ○* 각각의 사업장 모두 1억원 이상
사례2	3.5억원	3억원	0.5억원	A사업장 발급의무 ○, B사업장 발급의무 * A사업장 수입금액은 1억원 이상이나, B사업장 수입금액은 1억원 미만
사례3	1.5억원	0.9억원	0.6억원	A사업장, B사업장 발급의무 * 각각의 사업장 모두 1억원 미만

3.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만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니어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종이계산서 발급·송달·보관 등이 필요 없고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은 세법상 법인사업자에 해당되고, 영리법인과 같이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상기 법인들의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의무 위반 시 법인세법 제75조의8 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0조 ③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 전자계산서를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또는 월 단위로 발급하지 않고 3개월·6개월 단위로 발급할 수 있는지?

-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1.1.~12.31.) 내라고 하더라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전자계산서 미발급 및 증명수취 위반 등에 따른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018.1.1. 거래 건부터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마다 발급하거나 거래처별로 1역월(歷月) 내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 1曆月 :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

6.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시기?

-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163)
- 원칙적으로 건별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 발급특례 규정에 따라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해당 달의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계산서 작성연월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도 다음 영업일로 작성연월일이 순연되지 않으나, 계산서 발급특례 기한인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로 발급기한이 순연됩니다.

< 전자계산서 발급 특례 사례 >(2023.9.10.은 일요일)

- ◎ (사례 1) '23.8.1. ~ '23.8.31.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23.8.31.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3.9.11.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23.9.12.까지 전송
- ◎ (사례 2) '23.8.1. ~ '23.8.1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23.8.1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3.9.11.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23.9.12.까지 전송
- ◎ (사례 3) '23.8.1. ~ '23.8.25.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23.8.25.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3.9.11.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23.9.12.까지 전송

7.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는지요? 간이영수증은 가능한지?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으나, 간이영수증은 발행할 수 없습니다.
 - * 간이영수증은 매출거래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경비 등의 지출증명 서류의 수취 및 보관서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음
- 간이영수증 발행분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전자계산서 미발급에 해당됩니다.

8.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계산서 대신에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계산서 미발급에 해당하는지?

- 종이계산서 발급의 법적효력은 인정되나, 종이계산서 발급분에 대해 해당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며,
 - 발급의무자별 1% 가산세가 부과되는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의무자		1% 가산세 부과시기
'15.7.1. 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최초 시행)	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3억원 이상 개인	'16.1.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
'16.1.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17.1.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
'19.7.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 개인	'19.7.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
'22.7.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2억원 이상 개인	'22.7.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
'23.7.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	'23.7.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
'24.7.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 개인	'24.7.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개시되는 당해 과세연도에 종이계산서를 발급해도 가산세 부과를 하지 않고 그 다음 연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 발급의무 개시기간은 전자계산서 발급 제도기간이었기 때문임
 - 다만, 발급 시기를 위반하거나 허위·가공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9. 전자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

- 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계산서는 취소할 수 없으며, 당초 발급·전송된 전자계산서에 대해 수정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수정전자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0를 준용합니다.

- 주요 수정전자계산서 발급사유로는 「처음에 공급한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전자계산서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등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로 잘못 발급한 경우

- 잘못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음(-)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의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10. 간이과세자도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 간이과세자도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질의회신 : 소득46011-3261, 1999.8.18.

11. 전자계산서도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발급대행사업자(ERP·ASP)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 중 사업자가 선택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총 10건의 거래에 대해 홈택스로 5건,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5건 발급도 가능합니다.

12.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 직전(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전자발급 의무기간이 정해지며, 발급의무자별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의무자		전자발급 의무기간
'15.7.1. 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법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	- 법인 : 개업일 ~ 폐업일 - 개인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금액이 3억 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7.1. ~ 그 다음해 6.30 (수정신고 등의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 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그 다음 과세 기간)
'16.1.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1.1. ~12.31
'17.1.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전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다 음해 1.1. ~12.31
'19.7.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 개인	-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1. ~ 다음해 6.30
'22.7.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2억원 이상 개인	-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1. ~ 다음해 6.30

'23.7.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	-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1. ~ 계속*
'24.7.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 개인	-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1. ~ 계속*

13. 전자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개념?

- 국세청 전송이란 발급된 전자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에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과 동시에 전송이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필요 없으나,
 - 발급대행사(ERP, ASP)의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반드시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전송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된 전자계산서는 적법한 전자계산서가 아니므로 반드시 오류수정 절차를 거친 후, 국세청 홈택스로 재전송해야 합니다.

14. 전자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시기?

-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발급일의 다음 날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로 전송기한이顺延됩니다.
- * 발급일자가 '23.8.25.(금)인 경우 '23.8.26.은 토요일이므로 '23.8.28.(월)까지 전자계산서를 전송하면 됩니다.

15. 전자계산서 지연전송과 미전송의 구분?

- 전자계산서를 전송기한 내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며, 가산세를 부과하는 지연전송과 미전송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연전송	미전송
개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전송한 경우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전송한 경우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 * 법령근거 - (개인) 소득세법 §81의10 ①5,6호, (법인) 법인세법 §75의8 ①5,6호
- 개인의 과세기간은 1.1.~12.31.이며,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입니다. (소득세법 §5, 법인세법 §6)
 - 개인과 법인의 지연전송과 미전송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예시 〉

- ①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A가 '23.3.15. 전자계산서 발급
→ '23.3.17. ~ '24.1.25.까지는 지연전송이 되며, '24.1.26. 이후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미전송이 됨
- ② 법인사업자(사업연도 '22.7.1.~'23.6.30.) B가 '23.1.3. 전자계산서 발급
→ '23.1.5. ~ '23.7.25.까지는 지연전송이 되며, '23.7.26. 이후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미전송이 됨

16.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위반 가산세 종류?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사실과 다름	•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1%	-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미발급	2%	-
	지연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	1%	-
	허위등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지) 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2%	2%
	종이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1%('16년이후)	-
전송	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연도별·사업자별로 다름	-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전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所法 제81조의10 및 所습 제147조의6)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15.7.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시기 및 가산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	'16년	'17년	'18년	'19년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0.1%	0.5%	0.5%	0.3%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	-	0.1%	0.1%	0.3%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0.3%	1%	1%	0.5%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	-	0.3%	0.3%	0.5%

* (개정)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기준 : '23.7.1.부터 1억원 이상, '24.7.1.부터 8천만원 이상

17. 전자계산서 발급위반 가산세와 전송위반 가산세가 각각 부과되는지?

- 전자계산서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면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81의10 ①5,6호, 법인세법 §75의8 ①5,6호

18. 모든 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 개인 및 법인 사업자별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 기준이 다소 다르며, 가산세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 발급·전송위반 가산세 부과
- (개인사업자) 발급위반 가산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에 한하고, 전송위반 가산세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한하여 부과

*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

구분	발급위반 가산세	전송위반 가산세
법인	모든 법인사업자에 부과	
개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한함

19.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지연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 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내 용	가산세율
매출·매입 처별 계산서합 계표	미제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다음 연도 2.10.)까지 미제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0.5%
	지연제출	• 상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다음연도 2.10.)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3%
매입처별 세금계산 서합계표	미제출	• 사업장현황 신고대상 개인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법인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다음연도 2.10.)까지 미제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0.5%
	지연제출	• 상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다음 연도 2.10.)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3%

* 가산세 부과한도 :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

년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의무위반은 가산세 한도 없음(국세기본법 제49조)

- * (법인세·소득세) '18.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 (부가가치세) '17.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0.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할 경우 혜택은?

○ 계산서 종이 작성 및 우편송달 비용 절감, 신고서 작성 편의 등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1. 수정계산서 발급 사유와 방법은?

-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삭제나 정정이 불가하며, 착오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수정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를 준용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와 동일합니다.

✓ 홈택스 매뉴얼 주요 상담사례

① 홈택스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

1. 홈택스 회원가입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세무대리인]으로 회원가입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으로 회원가입 후 사업자 전환하여야 발급 가능합니다.
 - 1) 법인사업자 :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의 [회원가입 → 사업자·세무대리인]을 클릭한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개인사업자 :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의 [회원가입 → 개인]을 클릭한 후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인증하여 가입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홈택스 아이디(ID)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아이디를 변경하려면 회원탈퇴 후 재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회원 아이디는 가입정보 관리 및 보안을 위해 중요하므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아이디(ID)나 비밀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이디(ID)/비밀번호>Password) 찾기]에서 본인확인 후 아이디 일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는 가입 시 등록한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를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수단이 없어 사용자 아이디 확인 및 비밀번호 변경이 불가한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아이디/비밀번호분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새로운 비밀번호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의 암호를 모르는 경우나 암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은행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회원가입 시 공동인증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 최초 회원가입 시 사용한 공동인증서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추가로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공동인증서가 갱신 등에 의해 변경된 경우에는 홈택스 상단 [인증센터]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데 각각 사업장별로 홈택스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 사업장이 여러 개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회원으로 한번만 회원가입하면 됩니다.
-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사업자 전환 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발급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발급단계 인증 시 사업장별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필요)

6. 공동인증서와 보안카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홈택스에서만 공동인증서와 보안카드 병행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보안카드를 이용한 발급은 로그인 방법이 다릅니다. 로그인할 때 「공동인증서 로그인」으로 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전자서명은 공동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 보안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아이디 로그인」을 하여야 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번호(난수표)를 입력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7. 부서사용자는 무엇인가요?

- 홈택스에서는 동일한 아이디로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 업무상 여러 명이 동시접속이 필요하다면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신청하여 사용자별로 아이디를 생성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8.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부서사용자는 무엇인가요?

- 여러 명이 하나의 아이디로 동시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아이디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부서사용자 아이디는 사업자 아이디와 별도로 하나의 아이디만 신청 가능하며,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부서사용자는 보안카드 이용이 불가합니다.

9. 부서사용자 신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우측 상단에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클릭 후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 메뉴를 선택하여 아이디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먼저 "대기"상태이므로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주사업장으로 로그인 후 상단의 [My홈택스]에서 [부서사용자 관리]를 클릭하면 해당 사업장의 기존 부서사용자가 확인됩니다.
- 승인하고자 하는 아이디를 선택해서 "상태"를 "사용"으로 변경하면 부서사용자 이용이 가능합니다.
- 비밀번호를 분실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사업장으로 홈택스 로그인 후 [부서사용자 관리]에서 [임시 비밀번호 발송]을 체크하여 [비밀번호 발송]을 클릭하면 임시 비밀번호가 발송됩니다.
- 아이디와 임시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새로운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여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10. 부서사용자를 신청했는데 사용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주사업장으로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의 [My홈택스]에서 [부서사용자 관리]를 클릭하면 해당 사업장의 기존 부서사용자가 확인됩니다.
- 해당 아이디를 선택해서 "상태"를 "사용"에서 "탈퇴"로 변경 후 [저장]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동인증서가 개인용(금융용, 범용) 공동인증서는 안되고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만 이용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이유는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사업자번호로 발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급 주체는 사업자이므로 공동인증서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내재된 사업용으로 발급된 공동인증서이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에 대한 보안과 전자세금계산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게 되어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전자서명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12. 홈택스 회원정보 및 비밀번호 등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로그인한 후 상단의 [My홈택스] 클릭하여 [회원정보관리]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②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할 수 있나요?

- 현재 홈택스에서는 표준화·과부하 등의 문제로 거래명세서·견적서 등을 첨부할 수 없습니다. 다

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16줄까지 '품목란' 입력이 가능하므로 거래명세서 기능으로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자의 사업자 정보는 어떻게 변경하나요?

-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자 사업자의 인적사항 정보는 사업자등록된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것으로 직접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하면 홈택스에 반영되며 이메일 주소는 홈택스 [My 홈택스]에서 회원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기본사항이 자동적으로 생성되게 할 수는 없나요?

- 매입자를 거래처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되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자 정보보호를 위해서 자동생성되지 않으므로 직접입력 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신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최초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거래처 정보란에 등록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거래처정보 변경 시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처 및 품목관리] → [거래처정보] 또는 [My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처정보]에서 수정

4. 거래처 등록을 한꺼번에 할 수 있나요?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처 및 품목관리] 또는 [My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처정보]에서 거래처 일괄등록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여 업로드하면 일괄적으로 거래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홈택스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송하는 방법은?

- 메일 재발송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하며 재발송 방법은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메일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에서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의 좌측 선택박스를 선택한 후 [재발송]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재발송'은 수정발급 없이, 이미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단지 다시 보내주기만 하는 것으로 당초 주소와 다른 곳으로 보내고자 할 경우 이메일 주소만 수정하여 재발송하면 됨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처 및 품목관리] → [거래처 관리] 또는 [My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처정보]에서 해당거래처를 클릭하여 메일주소를 수정하면 이후 발급분부터는 변경된 정보로 계속 발급 가능함

6. 홈택스에서 일괄발급은 최대 몇 건까지 발급할 수 있나요?

- 일괄발급은 세금계산서를 건별로 발급하지 않고 한꺼번에 여러 건을 입력하여 일괄 발급하는 것

으로, 직접 입력하여 발급하는 방법과 엑셀 등을 업로드하여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직접 입력하여 발급하는 경우 한번에 최대 10건까지 화면에 입력 후 발급할 수 있으며, 엑셀양식 등을 업로드하는 경우 최대 100건을 입력·업로드하여 50건씩 발급할 수 있습니다.

* 100건 초과에서 1,000건까지 입력·업로드는 한꺼번에 발급이 가능

7. 홈택스의 반복발급과 복사발급은 어떻게 다르나요?

- 반복발급은 다른 기재사항은 동일하나 매입자만 다른 경우 사용하는 것이며,
- 복사발급은 기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불러와서 일부만 수정하여 발급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8. 홈택스의 발급보류 기능은 무엇인가요?

- 발급보류 기능은 발급할 세금계산서를 임시 저장하고, 그 사실을 매입자에게 알려 잘못 작성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 후 발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발급보류 기능을 사용할 경우 착오발급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미발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급보류 기간은 당일에 한합니다.

9. 매출자·매입자는 발급보류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 매출자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보류/예정 목록조회] → [발급보류 목록조회]에서 조회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 매입자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예정 목록조회] 화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발급보류분은 당일에 한하여 조회되며, 익일 0시에는 삭제되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단위과세자인 경우 종사업장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시 종사업장을 선택하는 창이 뜨며 거래처에 직접 문의하여 해당 사업장의 종사업장 번호를 선택하면 됩니다. (0번이 주사업장이고 1,2...가 각 종사업장임)

11. 품목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나요?

- 홈택스 [My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내품목조회] 메뉴에서 일괄등록 또는 건별등록을 클릭하여 품목명, 규격, 비고의 내용을 기재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12. 거래처 상호 및 이메일 등 거래처 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처 및 품목관리] → [거래처 관리] 또는 [My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처정보]에서 해당 거래처

를 클릭 후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③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1. ERP 또는 ASP 발급분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 매출자, 매입자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 매출자가 ERP나 ASP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그 전송분에 대하여 매출자·매입자 모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합계표 조회는 전송일 다음 날부터 조회 가능

2.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의 전송이 필요 없으므로 발급 후 바로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홈택스 외의 타 시스템에서 발급한 경우 전송을 하여야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므로 조회되지 않는다면 매출자에게 전송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홈택스에서 목록조회 금액과 합계표 금액이 왜 차이가 나요?

- 당일 발급집계 금액이 다음 날 합계표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홈택스를 통한 발급 및 ASP 등을 통해 전송된 세금계산서는 당일 자료로 구축되어 목록조회 가능하나, 합계표 금액은 당일 발급집계 금액이 다음 날 반영되므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4.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점에서 지점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수 없나요?

-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권한 동의를 하여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 [본지점·총괄납부 조회권한 관리] → [본지점 조회권한 동의 및 취소]에서 지점이 본점에 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 동의를 하였을 때 본점에서 지점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에서 발급(수취)된 전자세금계산서 상세내역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후 해당목록을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되어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건별상세조회] 메뉴에서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해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조회는 기간 제한 없이 조회 가능한가요?

- 2010년 이후 발급(수취)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1개월 이내로 조회기간을 설정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종류(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일반, 영세율, 위수탁, 수입 등)를 선택하거나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검색이 더욱 용이합니다.
- 월별·분기별로 조회를 하시려면 월/분기별 목록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7.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가입을 해야 전자세금계산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만 하는 경우에는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개인 회원 가입하여 로그인 후 사업자 전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조회 가능합니다.
- 개인 회원가입 시 휴대전화·신용카드로 본인인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방문하여 홈택스이용신청서 제출을 통해 가입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수취총액만 조회가능하고 목록조회는 불가능합니다.

8. 수정발급이력조회 화면은 무엇인가요?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력을 조회하는 화면으로 당초 발급 건에 대해 2014년 1월 이후 수정발급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 [조회] → [수정발급이력조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9.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조회하려는데 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라고 나오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는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로그인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시 지문 등 생체정보 인증을 통해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 홈택스 기타

1. 홈택스에서 "제3자 발급사실 조회"는 무엇인가요?

- '제3자 발급사실 조회'란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에 대해 국세청에 제대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승인번호·공급자·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공급가액·작성일자를 입력한 경우 "발급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이 구분하기 어렵거나,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증빙자료 확인 시 활용

2.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XML 원본보기'란 무엇인가요?

- 표준 전자세금계산서 XML 원본파일을 서식 형태로 읽을 수 있는 뷰어프로그램입니다.
- 홈택스에서 조회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XML파일을 뷰어로 보는 경우에는 XML 파일에 전자서명이 없으므로 '전자서명이 위·변조된 세금계산서입니다'고 표기되며, XML원본 파일은 전자세금계산서 메일에 첨부되어 있으며 관할세무서나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 [관리] → [전자(세금)계산서 XML원본보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전용메일이 무엇인가요?

- 홈택스에 사업자로 회원가입 할 경우 생성할 수 있는 메일 계정으로 홈택스 및 민간사업자를 통해 발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메일만 수신할 수 있는 전용메일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메일 예시) test@hometax.go.kr

4. 전자세금계산서 전용메일 주소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전용메일 주소는 변경할 수 없으나,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 [수신전용메일 신청] 메뉴에서 신청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한 전용메일 주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메일계정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인데 전송내역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사업자로 회원가입 후 [My홈택스] → [부서사용자 관리] → [부서사용자 아이디 관리]에서 상태를 "대기"에서 "사용"으로 변경한 후 초기화된 비밀번호 버튼을 누르면 아이디에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후 로그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⑤ 홈택스 메일발송 등

1. 메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메일주소 입력오류나 수신함이 가득 차서 추가 수신이 차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메일계정의 수신차단 내역 중에 홈택스 메일이 들어있다면 삭제하시면 됩니다.
-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계정의 보안수준이 높게 설정된 경우에는 수신함에 이메일이 도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안수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 포털사이트의 메일인 경우에는 보안수준을 낮춰주시고 회사용 메일인 경우에는 메일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홈택스에서 발신되는 메일을 차단하지 않게 설정·변경요청 하시면 됩니다.

- 각 포털사이트 메일함의 환경설정 및 도움말을 참고하시면 유형별 조치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Daum이나 Naver 메일을 쓰는 경우에는 청구서함 수신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청구서함에 저장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로 전송하면 거래처에 메일이 수신되지 않고 메일발송 결과가 휴면계정으로 확인되는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 홈택스에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발신 주소(hometaxadmin@hometax.go.kr)가 수신차단 목록에 있는 경우에 수신이 되지 않습니다.
- 수신차단 목록에 해당 메일주소가 있으면 사용하는 메일 계정에 따라 메일발송결과가[메일계정오류(휴면계정)]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메일 환경설정 등에서 [수신허용/차단] 메뉴를 확인하여 차단된 경우에는 홈택스 발신주소를 제거하고 재발송하시면 됩니다.

3.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시 인증서 선택창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터넷옵션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hometax.go.kr 등록하면 됩니다.
-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 탭]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선택] → [사이트 버튼 클릭]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팝업창에서 *.hometax.go.kr 를 추가 → 닫기
브라우저 환경 자동설정하기 (브라우저 종료 후 홈택스 재접속 필요)
- 통합설치프로그램 화면에서 공동인증서와 전자서명 프로그램을 재설치하여야 합니다.
- 통합설치프로그램 → [선택] 탭 → MAGIC-PKI, MAGIC-XML → 다운로드 → 다운로드된 파일 실행
 - * 홈택스 공동인증서 클릭하면 화면 오른쪽 하단에 "고객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제품 설치 확인 중입니다." 메시지 창이 나오는 경우
 - * 발급 화면에서 "미설치 파일 존재합니다, 설치하시겠습니까?" 메시지 창이 나오는 경우
 - * 목록조회 화면에서 조회기간 날짜가 빈 공간으로 나오는 경우
 - * 홈택스 로그인 클릭하면 "통합설치프로그램(VeraPort)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베라포트 설치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메시지창이 나오는 경우에도 위의 방법으로 조치하면 됩니다.

4.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이 특정한 거래처에서 발급한 것만 받지 못하고 있고 메일 발송결과는 '수신거부'로 확인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시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을 잘못 기재하여 이메일 수취자가 관련 없는 메일을 수신한 경우 '수신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 '수신거부'를 한 공급자의 메일을 받고자 하면 해당 거래처에서 받은 이전 이메일을 확인하여 [본 메일이 수신인과 관련 없는 경우 수신거부/해제(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항목에서 [수신거

부/해제(여기)]를 클릭하면 해제됩니다.

5. 보안모듈관리 프로그램 설치에서 설치되지 않고 화면이 멈춰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 팝업창 중간에 "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수동설치 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창을 모두 닫고 [제어판] → [프로그램 추가제거] or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Veraport20(보안모듈 관리 프로그램)을 삭제한 후 다시 홈텍스로 접속하여 홈페이지 하단의 [통합설치프로그램] 클릭하면 자동설치 됩니다.

6.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출력] 또는 [합계표] 조회 후 [명세서 출력]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출력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 및 실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프로그램을 다시 다운로드 하여야 합니다.
- 다운로드 방법은 홈텍스 하단 → [통합설치프로그램] → 보고서(REXPRT) 설치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실행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7. 통합설치 프로그램 안내 화면에서 설치완료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 통합설치 프로그램에서 필수 탭의 통합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클릭해서 실행 진행하시면 됩니다.
- 설치가 안되거나 설치완료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오면 모든 인터넷 창을 닫고 [제어판] → [프로그램 추가제거] or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 후 재설치하시고 재설치 후 새로고침(F5) 하거나 인터넷 창을 닫고 다시 접속하시면 됩니다.



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마세요

- 국세청 -

- 2월은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달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19%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19% 단일세율 적용 기간 : 5년 → 20년, 외국인 기술자 감면 기간 : 5년 → 10년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0만여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수 : ('21년) 50.5만 명 → ('22년) 54.4만 명
 -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와 연말정산 매뉴얼(영·중·베트남어)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하였고,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 영어)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특히, 올해에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영어)을 새롭게 제작하여 국세청 유튜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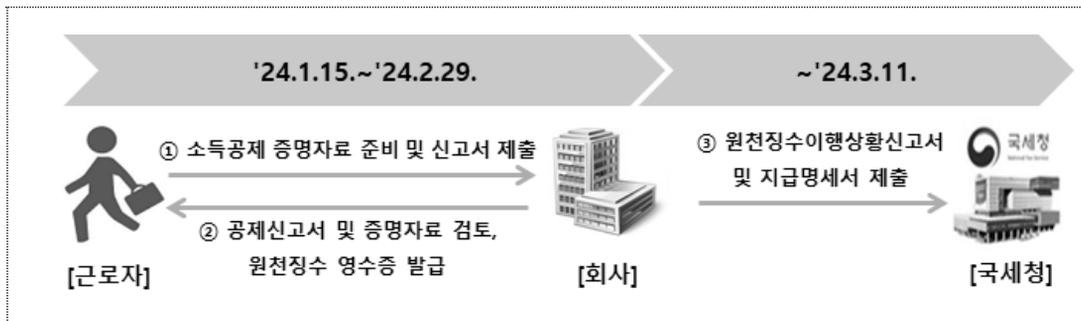
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꼭 참고하여 외국인 단일세율 등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23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 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월 말일
 -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세액과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방법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 연말정산 주요 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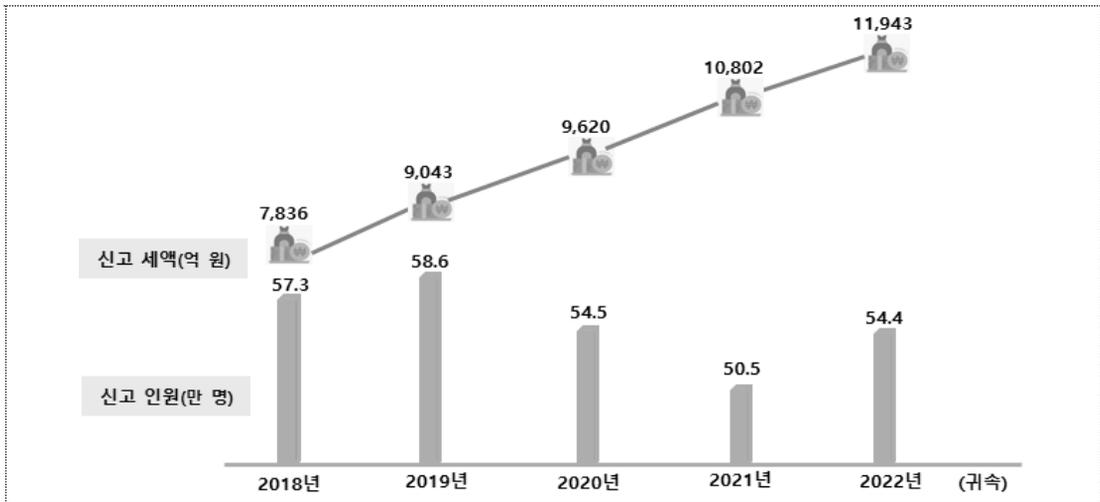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24.1.19.까지 홈페이지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다양한 신고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한·영 대조식 연말정산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연말정산 매뉴얼, 영어로 진행되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유튜브 동영상 등
 -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외국어 신고안내 자료를 안내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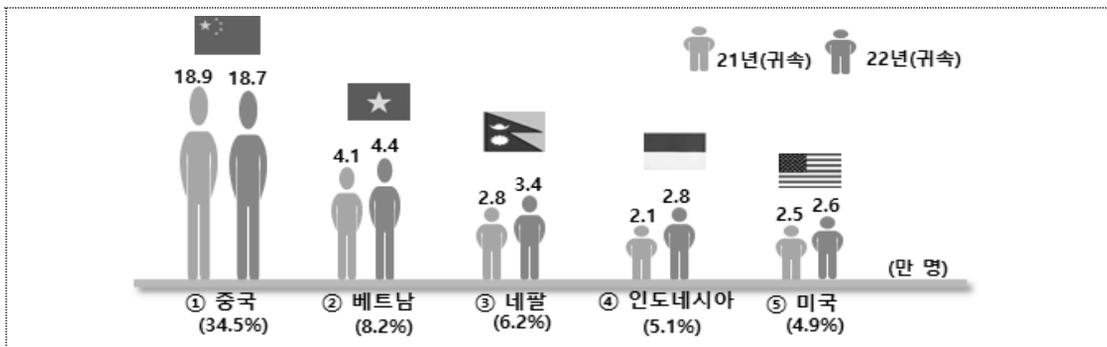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귀속연도 기준)은 코로나 대유행 등의 영향을 받아 '20년도(54.5만 명)와 '21년도(50.5만 명)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 '22년에는 54.4만 명을 기록하여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고세액도 역대 최대인 11,94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 ※ 법무부 출입국 통계상 국내 체류외국인 수도 '21년 전년 대비 3.9% 감소하였다가 '22년 전년 대비 14.8% 증가 ('20년 2,036천 명 → '21년 1,957천 명 → '22년 2,246천 명)

|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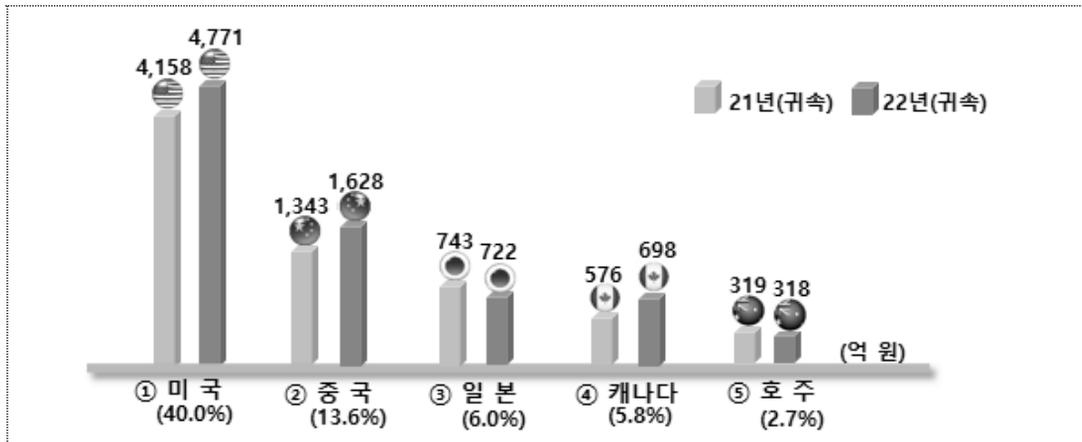
- '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를 국가별(상위 5개국)로 살펴보면 중국이 34.5%(18.7만 명)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베트남 8.2%(4.4만 명), 네팔 6.2%(3.4만 명), 인도네시아 5.1%(2.8만 명), 미국 4.9%(2.6만 명) 순입니다.

|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국가별 신고인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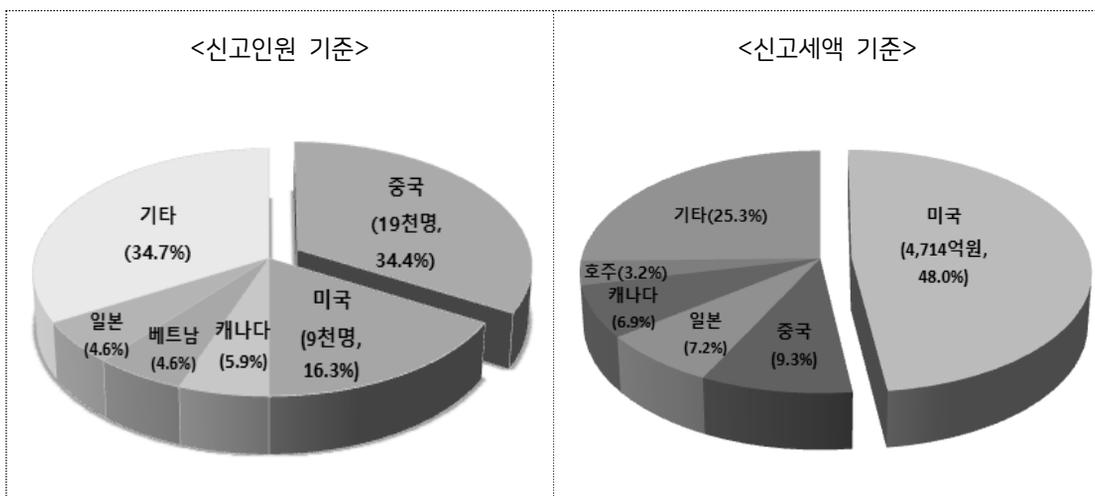
- '22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세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40%(4,771억 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중국 13.6%(1,628억 원), 일본 6.0%(722억 원), 캐나다 5.8%(698억 원), 호주 2.7%(318억 원) 순입니다.

|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국가별 신고세액 |



- '22년 귀속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소득 상위 10% 구성비를 살펴보면 신고인원 기준으로 중국(34.4%, 19천 명), 미국(16.3%, 9천 명), 국적 근로자가 50.7%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 신고세액 기준으로는 미국 국적 근로자가 48.0%(4,714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소득 상위 10%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별 구성비 |



3. 외국인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관련 정보

1]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 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주택자금공제(소득세법 제52조), 월세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는 적용 가능
-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나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 세액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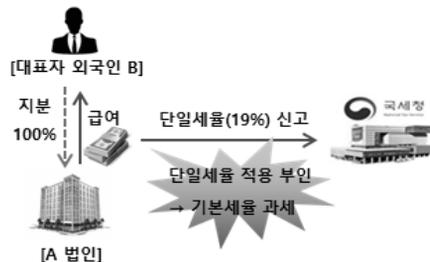
2]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19%)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14.1.1.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을, '13년 이전 출국하였다가 '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4.1.1. 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간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
-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에는 비과세 급여이나 적용 시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단일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 주식회사 A법인의 대표인 외국인 B는 A법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A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에 대해 단일세율(19%) 적용 신고 → 단일세율 적용 부인, 기본세율로 과세



③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2. 12. 31. 이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로부터 최초 3년간은 소득세의 70%를 감면



기술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은 ①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②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지고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 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이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④ 원어민 교사는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상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원어민 교사가 면제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 2년(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 구체적인 면제요건은 조세조약 체결국마다 다르므로 실제 조세조약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면제요건을 본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원문을 통해 확인 필요



본인의 거주지국에 따라 조세조약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 → 「법령」 → 「조세조약」을 통해 조약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해당 조약
면제조항 없음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포르, 캐나다, 홍콩 등 16개국
2년간 면제	미국, 베트남, 스페인, 일본, 프랑스, 호주 등 72개국
3년간 면제	조지아, 중국 등 4개국

4.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영어로 연말정산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1588-056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한·영 대조식으로 작성한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와 연말정산 방법, 계산 사례 등을 담은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영·중국·베트남어)」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 안내 책자, 외국어 매뉴얼 등은 누리집뿐만 아니라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특히, 올해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동영상」 시리즈(2회, 각 10분)를 처음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합니다.
 - 국세청 직원과 유튜버가 영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연말정산 개념, 외국인 단일세율(19%) 규정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어 등 낯선 환경 속에서도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이용방법 |

유 형	경 로
 전화 상담(영어)	1588-0560, 오전 9:00 ~ 오후 6:00(11:30~1:00 제외)
 인터넷 상담(영어)	www.nts.go.kr/english/main.do > Help Desk > Q&A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영어)	www.nts.go.kr/english/main.do > Resources > Publication > 2023 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연말정산 매뉴얼 (영어·중국어·베트남어)	www.nts.go.kr/english/main.do > Resources > Publication > 2023 Year-end Tax Settlement Manual for Foreigners
 연말정산 유튜브 영상 (영어)	www.youtube.com/user/ntskorea

참고 1.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FAQ)

1

외국인 근로소득자입니다. 매월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요?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에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급여에서 차감)합니다.
 -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동법 제137조

2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합니다.
-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3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통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근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4

단일세율(19%)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 및 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5

단일세율(19%)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이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되었는데 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연말정산 시 적용할 수 있으며, '22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 관련 법령 및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서면-2023-국제세원-1002, 2023.06.09.

6

20년으로 확대된 단일세율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적용기간의 기산점인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 '14.1.1.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며, '13년 이전 출국하였다가 '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4.1.1. 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봅니다.
- ※ 관련 예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

7

단일세율(19%) 적용을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지요?

- 단일세율 적용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제한적인 특례 규정으로 개인별 과세표준 및 공제항목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유·불리 여부를 일괄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하신 후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8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가요?

-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9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가요?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10

외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도 건강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 외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 관련 법령 및 예규: 소득세법 제52조, 원천세과-363(2009.4.24.)

11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다만,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제5항

12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공제가 가능하다면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 배우자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외에서 발급받은 이와 유사한 서류) 및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0조

13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공제가 가능하다면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 외국인 거주자의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외국법에 의한 호적서류 등 직계존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 증명원(직계존속의 소득 증명원) 및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예: 생활비 송금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및 예규: 소득세법 제50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2010.2.10.)

14

비거주자도 표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비거주자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2조

15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소득세 면제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면제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각국의 조세조약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 > 법령 > 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 초청 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 ※ 관련 사설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 없음
 - 초청 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 관련 조약: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 초청 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 방문 목적: 일차적으로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 다른 목적으로 기입국한 외국인인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음

참고 2 -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 (소득세법 §1의2)

※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간주함.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며 관광, 치료 등 출국 목적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출국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함. (소득세법 시행령 §4)

* 183일 연속으로 거주할 필요는 없음

○ 거주자 판단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

- (주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2①)

※ 국내·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경우	<p>①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소득세법 시행령§2③1)</p> <p>②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소득세법 시행령§2③2)</p> <p>③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소득세법 시행령§2⑤)</p>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p>①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소득세법 시행령§2④)</p>

- (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소득세법 시행령 § 2②)

□ 해외현지법인등에 파견된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봄 (소득세법 시행령 § 3)

*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참고 3 - 내·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액공제 비교

구 분		내국인		외국인		근거 또는 참고사항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총급여		국외근로소득 포함	국내원천소득	국외근로소득 포함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3조
근로소득공제		○	○	○	○	
인적 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본인만 가능	○	본인만 가능	소득세법 122조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등)	○	본인만 가능	○	본인만 가능	소득세법 122조
연금보험료공제		○	○	○	○	본인 납부 국민연금보험료
특별 소득 공제	국민건강·고용보험료	○	X	○	X	
	주택자금공제	○	X	○	X	
그밖의 소득 공제	연금저축 등 공제	○	X	○	X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공제	○	X	○	X	
	주택마련저축공제	○	X	X	X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공제	○	X	○	X	
	신용카드소득공제	○	X	○	X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X	○	X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X	○	X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X	○	X	
	우리스사주조합출연금공제	○	○	○	○	거주자 제한없이 조합원이면 가능
세액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	○	○	○	
	자녀세액공제	○	X	○	X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 료·교육비·기부금)	○	X	○	X	
	월세액 세액공제	○	X	○	X	
	납세조합세액공제	○	○	○	○	납세조합에 가입 원천징수한 경우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	X	○	X	
표준세액공제	○	X	○	X		

참고 4 -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1.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

<p>1단계 총급여액</p>	<p><u>연간근로소득</u>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300)만 원 이내]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 원 이내) 등 																		
<p>2단계 근로소득금액</p>	<p><u>총급여액</u>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공제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총급여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근로소득공제금액(2천만 원 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 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급여액 × 7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만 원 + (500만 원 초과금액 × 4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금액 × 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금액 × 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억 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1,475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 × 2%)</td> </tr> </tbody> </table>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2천만 원 한도)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금액 ×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금액 ×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금액 ×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 × 2%)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2천만 원 한도)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금액 ×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금액 ×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금액 ×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 × 2%)																			
<p>3단계 과세표준</p>	<p><u>근로소득금액</u> (-)각종 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밖의소득공제 <u>(+)소득공제</u> <u>종합한도 초과액</u> = 과세표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특별소득공제</th> <th style="text-align: center;">그 밖의 소득공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①보험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개인연금저축</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②주택자금공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③신용카드 등 사용금액</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④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⑤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⑥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⑦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⑧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td> </tr> </tbody> </table> <p>○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 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p>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①보험료	①개인연금저축	②주택자금공제	②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③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④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⑤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⑥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⑦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⑧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①보험료	①개인연금저축																			
②주택자금공제	②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③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④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⑤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⑥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⑦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⑧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4단계 산출세액	$\frac{\text{과세표준}}{(\times) \text{세율}} = \text{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1,400만 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금액 ×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금액 × 24%)
		8,800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35%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 × 35%)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706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금액 ×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9,406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 ×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17,406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 × 42%)
		10억 원 초과	45%	38,406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 × 45%)
		5단계 결정세액	$\frac{\text{산출세액}}{(-)\text{감면·세액공제}} = \text{결정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등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frac{\text{결정세액}}{(-)\text{기납부세액}} = \text{납부(환급)할 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납부세액 -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9% 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2. 단일세율 19%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 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 원) 등
2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frac{\text{연간근로소득}}{(\times) 19\%} = \text{결정세액}$	
3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frac{\text{결정세액}}{(-)\text{기납부세액}} = \text{납부(환급)할 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납부세액 -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9%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기본세율 vs 19% 단일세율 적용 사례

< 기본사항 >

- Henry는 2023년도에 ABC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급여를 받았다.
 - 연간 근로소득 ₩200,000,000(비과세 소득 ₩5,000,000 포함)
- 가족사항: 본인(Henry, 36세), 부인(Jin, 38세)
 - * 부인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0,000 이하이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
- 지출내역
 - 국민연금 ₩2,500,000 - 국민건강보험료 ₩1,500,000
 - 기납부세액 ₩44,334,000

기본세율 적용 방법		19% 단일세율 방법	
연간근로소득	₩200,000,000	연간근로소득	₩200,000,000
비과세근로소득	5,000,000		
총급여액	₩195,000,000		
근로소득공제	16,650,000		
근로소득금액	₩ 178,350,000		
인적공제	3,000,000		
-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2,500,000		
특별소득공제	1,500,000		
- 국민건강보험료			
과세표준	₩ 171,350,000		
산출세액(기본세율)	₩ 45,173,000		
근로소득 세액공제	200,000		
결정세액	₩ 44,973,000	결정세액	₩ 38,000,000
기납부세액	(-) 44,334,000	기납부세액	(-) 44,334,000
차감징수세액	₩ 639,000	차감징수세액	₩ △6,334,000

참고 5 - 소득·세액공제 시 필요한 증빙서류 발급방법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4.1.14.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

근로자는 '23.12.1.부터 '24.1.19.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함

2. 근로자가 발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일괄제공된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동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등)

첨부 서류	대상자	발급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3년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된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험료납입영수증	생명보험 등에 가입한 자	보험회사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등	의료비 공제 대상 근로자	병원, 약국
교육비납입증명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학생인 자	교육기관
기부금 영수증	기부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	기부처
신용카드 등 소득금액 확인서	신용카드 공제 대상 근로자	카드회사



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식공시 모범사례 마련

- 금융감독원 -

- 주요 내용 -

◆ 금융감독원은 건설회사의 부동산 PF 관련 우발부채를 보다 명확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 「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였습니다.

√ 고금리·고물가로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분양 사업장이 증가할 경우 관련 PF 대출의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보증 등을 제공한 건설회사의 재무상황이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건설회사의 우발부채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현재 건설회사들의 주식 공시로는 정보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건설회사마다 PF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에 사용하는 용어나 제공하는 정보가 상이
- 복수의 신용보강을 단순히 중복 공시하여 전체 우발부채 규모 파악 곤란
- 사업장 위치, 사업주체, 사업단계 등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부족

√ 이에 금융감독원은 건설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였습니다.

◆ 건설회사의 부동산 PF 우발부채 규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를 제시하고, 용어 및 기재사항을 통일하는 등 신용보강 익스포저를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 주석공시 모범사례 요약 >

- 우선 부동산 PF 사업의 단계나 종류 별로 우발부채 규모와 대출채권 등 기초자산의 만기별 익스포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 양식을 마련하였습니다.
-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용어를 통일하면서 현재 익스포저(보증금액), 최대 익스포저(보증한도) 등 필수 기재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 √ 사업 지역(광역시, 시, 군 등), 사업장 형태(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PF 대출 종류(브릿지론, 본 PF) 등 자원 유출위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확충하였습니다.
- √ 또한, 복수의 신용공여를 제공한 경우 보증금액 등은 중첩 부분을 제외하고 기재하되 세부 명세에 그 내용을 상술하도록 하였습니다.
-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중도금 대출 및 SOC사업의 신용보강은 세부 내역 없이 전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요약표만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우발부채 공시를 선정·예고하였으며, 향후 실태점검 등을 통해 건설회사의 PF 대출 우발부채가 충실히 공시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23.12월말 既송부)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도 반영하는 등 기업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제11장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1. 추진 배경

- 부동산 PF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회사는 통상 시공 등 본연의 기능 외에도 보증 등을 통해 PF 대출의 신용을 보강하는 역할을 병행
 - 고금리·고물가로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분양 사업장이 증가할 경우 관련 PF 대출의 신용을 보강한 건설회사의 재무상황이 크게 악화 가능
 - 이처럼 건설회사의 우발부채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현재 건설회사들의 주석 공시로는 정보가 용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

- 우발부채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제1037호)에서 주석 공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기업 공시서식 작성기준**에도 일부 양식이 있으나,

* ① 추정금액, ② 불확실성의 정도, ③ 변제 가능성

** 제11장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 신용보강의 특성 및 위험도를 고려한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공시지침이 없어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주석 공시를 하고 있음

☞ 건설회사의 부동산 PF 관련 잠재위험이 보다 명확히 공시되도록 이해관계자 (건설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

< 현행 주석공시의 주요 문제점 >

- ▶ (비교가능성 부족) 건설회사마다 PF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에 사용하는 용어나 제공하는 정보가 상이
 - √ '현재 익스포저'는 보증금액, 실행금액, 대출금액, 대출잔액 등으로, '최대 익스포저'는 약정금액, 보증한도 등으로 혼용
 - √ PF 우발부채의 현재 익스포저나 최대 익스포저 중 일부만 공시하는 등 공시되는 정보의 내용도 상이한 상황

< 현행 주석공시의 주요 문제점 > - 계속

- ▶ (전체 우발부채 규모 파악 곤란) 건설회사들은 통상 하나의 PF 대출에 복수의 신용보강을 제공하는데, 대부분 중첩된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각각의 신용보강 내용을 개별적으로 열거
 - √ 중첩 부분에 대한 고려없이 각각의 신용보강을 단순 합산할 경우 실제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
- ▶ (위험수준에 대한 정보 부족) 사업장 위치(수도권 or 지방), 사업 주체 (시행사 or 조합), 사업 단계 (착공 전 or 착공 후) 등에 따라 PF 우발부채의 위험 정도가 다름에도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
 - √ 조합 주체의 '정비사업'은 토지가 확보되어 있고 조합원 분담금 등이 존재하여 시행사 주체의 '도급사업' 보다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
 - √ 본 PF 대출 보다는 토지매입이나 인허가까지의 '착공 이전' 단계의 브릿지 론의 위험이 높음

【 (현행) PF 우발부채 주석 공시 사례 예시 】

A사 사례 : 대출금액·대출잔액(현재 익스포저), 총 보증한도(최대 익스포저), 채권기관, 대출기간, PF유형 등을 상세하게 기재

지역	채권기관	대출금액	대출잔액	총 보증한도	보증내역	대출기간	PF유형
XX시	XX은행	X	X	X	연대보증	'XX.X ~ 'XX.X	Loan

B사 사례 : 보증대상, 제공처, 보증금액(현재 익스포저) 등만 개략적으로 기재

지급보증내역	피보증회사	보증금액	보증제공처
PF 대출보증	X	X	X

C사 사례 : 보증대상 및 한도 등을 서술식으로 기재

XXX는 당기말 현재 동업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발급받은 공사관련 보증에 대하여 XXX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음

(붙임2) PF 사업 단계별 대출 및 신용보강 구조

II.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 주요 내용

주요 방향

- ◆ PF 우발부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 신설
- ◆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용어 통일 및 필수 기재사항 제시
- ◆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신용보강에 대한 공시 간소화

1. 종합요약표 신설 → PF 우발부채 규모 한 눈에 파악

◆ PF 우발부채 전체 규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 신설

- (용어 통일, 만기 세분화) 최대 익스포저는 ① '보증한도'로 기재하고 현재 익스포저는 ② '보증금액'으로 통일하여 기재하되, ③ 3개월, 6개월 내 도래분을 별도 분류*하도록 하여 만기 정보의 실효성 제고
 - * PF ABCP, AB 단기사채 등 유동화 증권의 만기가 3개월, 6개월 등이 다수인 점을 감안
- (위험수준 반영) 우발부채의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별로는 ④ '정비사업(조합주체)'과 '기타사업(정비사업 외, 시행사 등 주체)'으로, ⑤ 사업단계별로는 '브릿지 론'과 '본 PF' 등으로 구분
- (복수 신용보강) 하나의 PF 대출에 복수의 신용보강을 제공한 경우 전체 익스포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에 ⑥ 중첩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다만 세부 내역에서 중첩 사실 등을 별도로 설명)

【 부동산 PF 우발부채 종합요약표^{주)} 】

구분	종류	보증한도 (연결)	보증금액 (연결)	대출잔액 (연결)							전기
				당기	3 만기 구분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3년 이내	3년 초과	
정비사업	브릿지론	X	X	X	X	X	X	X	X	X	X
	본PF	X	X	X	X	X	X	X	X	X	X
	계	X	X	X	X	X	X	X	X	X	X
기타사업	브릿지론	X	X	X	X	X	X	X	X	X	X
	본PF	X	X	X	X	X	X	X	X	X	X
	계	X	X	X	X	X	X	X	X	X	X
총계		X	X	X	X	X	X	X	X	X	X

- 주 1) 보증의 대상이 다른 '책임준공'과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중도금 대출' 및 'SOC 사업' 신용보강은 종합요약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
 2) 컨소시엄 사업은 전체 한도와 연결회사 부담률을 고려한 금액이 각각 중요하므로, 별도 종합요약표를 작성

2. 필수 기재사항 제시 → 위험수준 파악 정보 확충

◆ 건설회사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용어를 통일하면서 최대 익스포져(보증한도), 현재 익스포져(보증금액) 등 필수 기재사항을 제시

- (위험수준 반영) 사업장별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① 사업지역(광역시, 시, 군 등), ② 사업장 형태(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③ PF 종류(브릿지론, 본 PF) ④ 조기상환 조항 등을 기재
- (복수 신용보강) ⑤ 복수의 신용보강을 제공한 경우에는 중첩된 부분을 제외하고 ⑥ 가장 큰 금액의 신용보강으로 분류하되, ⑦ 중첩되어 제외된 신용보강 내역은 별도 기재
- (컨소시엄)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회사의 위험노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⑧ 컨소시엄의 보증한도와 ⑨ 회사의 부담률을 기재

- (중요성 고려)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액이 전체 부동산 PF 보증금액의 1%(또는 100억원) 미만인 사업장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⑩ '기타'로 일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
- (책임준공) 사업장별 책임준공 약정금액을 ⑪ 병기하되, 전체 책임준공약정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요약표를 별도로 작성

3. 저위험 신용보강 공시 간소화 → 위험도를 고려한 공시 차별화

-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중도금 대출이나 SOC사업의 신용보강은 세부 내역 없이 전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요약표만 공시
 - 중도금대출은 주로 분양 후에 이뤄지고, SOC 사업의 경우 주로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음

【 본 PF의 중도금대출 보증 내역】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사업건수	보증한도	약정금액	대출잔액	사업건수	보증한도	약정금액	대출잔액
정비사업 ^{주)} (연결회사분)	X (X)							
기타사업 ^{주)} (연결회사분)	X (X)							
계 ^{주)} (연결회사분)	X (X)							

주) 컨소시엄에 따라 전체 및 연결회사 금액이 다른 경우 연결회사 금액은 괄호에 추가 표시

【 SOC 사업 보증 내역】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공사건수	전체	연결회사분	공사건수	전체	연결회사분
보증한도	X	X	X	X	X	X

III.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효과)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식공시 모범사례」 발표로 건설회사의 부동산 PF 우발부채가 보다 체계적·일관적으로 공시될 것으로 기대
 - 특히, 정보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기재하도록 유도하여 건설회사의 위험 수준에 대한 평가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
- (안내·홍보) '23사업연도부터 건설회사 등이 우발부채 모범사례를 활용하여 주식 공시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안내·홍보('23.12월말 既송부)
 - 기업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도 반영
 - * 제11장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 (공시 적정성 점검)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중의 하나로 우발부채 공시를 선정·예고한 바 있으므로,
 - 상장 건설회사 등의 2023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주식에 우발부채를 충실히 공시하였는지 점검할 예정
 - * 「'23.6.14. (보도자료) 조건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예고」 참고

참고: 주식공시 모범사례 발표 현황

- '13.11월부터 총 11건 발표
 - ① 특수관계자거래 주식공시 모범사례('13.11.11.)
 - ② 타기업에 대한 지분 관련 주식공시 모범사례('13.12.30.)
 - ③ 공정가치 측정 관련 주식공시 모범사례('14.5.29.)
 - ④ 금융자산 양도 관련 주식공시 모범사례('15.12.23.)
 - ⑤ 금융상품(제1109호), 수익(제1115호) 관련 주식공시 모범사례('17.1.3.)
 - ⑥ 리스 관련 주식공시 모범사례('18.1.16.)
 - ⑦ 개발비 관련 주식공시 모범사례('18.2.2.)
 - ⑧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관련 주식공시 모범사례('21.5.27.)
 - ⑨ 보험계약 관련 주식공시 모범사례('21.8.2.)
 - ⑩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식공시 모범사례('23.11.30.)
 - ⑪ 가상자산 관련 주식공시 모범사례('23.12.21.)

붙임 - 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주석 공시 모범사례

※ K-IFRS 제1037호 적용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의 성격

- ▣ 기업의 주석공시 작성 편의를 도모하고 재무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참고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정한 모든 공시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은 모범사례에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함
- ▣ 모범사례가 제시하는 양식 및 기재범위는 기업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작성 시 재무정보이용자의 정보이용 효익과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 등 기업의 실정을 고려하여 공시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축소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 ▣ 동 모범사례는 주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별도재무제표의 경우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 동 모범사례에 제시되지 않은 우발부채가 존재하는 경우 모범사례에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재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범사례 양식에 준하여 관련 정보를 적절히 공시하여야 함

1. PF 우발부채

(1) 부동산 PF 종합 요약표(책임준공, 중도금대출, SOC 미포함)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에 PF와 관련한 총 XXX백만원(전기말 XXX백만원)의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중 연결회사 단독 사업에 대한 금액은 XXX백만원(전기말 XXX백만원), 컨소시엄 참여 사업에 대한 금액은 XXX백만원(전기말 XXX백만원)입니다. (보증금액으로 기재)

전기말에는 우발부채로 계상되었으나, 충당부채로 전환된 금액은 XXX백만원이며, 관련 사항은 주석 XX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요변동요인 기재 필요)

이 중 특수관계자에 제공하는 신용보강은 총 XXX백만원(전기말 XXX백만원)이며, 대부분 기타사업과 관련됩니다.

정비사업 및 기타사업과 관련한 PF 우발부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결기업(또는 개별기업) 단독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¹⁾	종류 ²⁾	보증 한도 ³⁾ (연결)	보증 금액 ⁴⁾ (연결)	대출잔액 ⁵⁾ (연결)								
				만기 구분 ⁶⁾								전기
				당 기	3개 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3년 이내	3년 초과		
정비 사업	브릿지론 ⁷⁾	X	X	X	X	X	X	X	X	X	X	
	본PF ⁷⁾	X	X	X	X	X	X	X	X	X	X	
	계	X	X	X	X	X	X	X	X	X	X	

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식공시 모범사례 마련

기타 사업	브릿지론 ⁷⁾	X	X	X	X	X	X	X	X	X	X
	본PF ⁷⁾	X	X	X	X	X	X	X	X	X	X
	계	X	X	X	X	X	X	X	X	X	X
총계		X	X	X	X	X	X	X	X	X	X

주 1) 구분 기준

정비사업 : 재개발·재건축 등 대부분 도급공사에 의해 이뤄지며 분양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
 기타사업 : 정비사업 이외의 경우, 대부분 민간시행사 또는 시공사 자체 분양에 의한 사업이며 분양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

- 2) 시공 이전 토지매입, 인허가 등을 위한 브릿지론과 인허가 후 공사비 마련 등을 위한 본PF로 구분
- 3) 보증한도 :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는 PF대출에 관하여 시공사가 보증하는 한도액
- 4) 보증금액 : 보증한도 내에서 실제 보증을 실행한 금액
- 5) 대출잔액 : 대출약정 내에서 실제 대출을 실행한 후 상환하고 남은 금액
- 6) 기초자산에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만기를 기재하고, 유동화증권에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증권의 만기를 기재
- 7) 사업장 기준으로 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금액은 제외한 금액을 고려 (책임준공의 경우 대부분 신용보강과 중복되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으므로 포함하지 않고, 중도금대출 사항도 미포함)

□ 건설회사가 컨소시엄 형태의 보증·도급이 있는 경우 컨소시엄 참여 사업을 컨소시엄(전체)과 연결회사 부담분으로 각각 공시

* 다만, 컨소시엄 형태의 보증 등을 아래 표 외에 효과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다른 표시도 가능

<컨소시엄 참여 사업(전체)>

(단위: 백만원)

구분 ¹⁾	종류 ²⁾	보증 한도 ³⁾ (전체)	보증 금액 ⁴⁾ (전체)	대출잔액 ⁵⁾ (전체)							
				당 기	만기 구분 ⁶⁾						전기
					3개 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3년 이내	3년 초과	
정비 사업	브릿지론	X	X	X	X	X	X	X	X	X	X
	본PF ⁷⁾	X	X	X	X	X	X	X	X	X	X
	계	X	X	X	X	X	X	X	X	X	X
기타 사업	브릿지론	X	X	X	X	X	X	X	X	X	X
	본PF ⁷⁾	X	X	X	X	X	X	X	X	X	X
	계	X	X	X	X	X	X	X	X	X	X
총계		X	X	X	X	X	X	X	X	X	X

주 1) 구분 기준

정비사업 : 재개발·재건축 등 대부분 도급공사에 의해 이뤄지며 분양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
 기타사업 : 정비사업 이외의 경우, 대부분 민간시행사 또는 시공사 자체 분양에 의한 사업이며 분양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

- 2) 시공 이전 토지매입, 인허가 등을 위한 브릿지론과 인허가 후 공사비 마련 등을 위한 본PF로 구분

- 3) 보증한도 :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는 PF대출에 관하여 시공사가 보증하는 한도액
- 4) 보증금액 : 보증한도 내에서 실제 보증을 실행한 금액
- 5) 대출잔액 : 대출약정 내에서 실제 대출을 실행한 후 상환하고 남은 금액
- 6) 기초자산에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만기를 기재하고, 유동화증권에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증권의 만기를 기재
- 7) 사업장 기준으로 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금액은 제외한 금액을 고려(책임준공의 경우 대부분 신용보강과 중복되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으므로 포함하지 않고, 중도금대출 사항도 미포함)

<컨소시엄 참여 사업(연결회사 부담분)>

(단위: 백만원)

구분 ¹⁾	종류 ²⁾	보증 한도 ³⁾ (연결)	보증 금액 ⁴⁾ (연결)	대출잔액 ⁵⁾ (연결)							
				당 기	만기 구분 ⁶⁾						전 기
					3개 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3년 이내	3년 초과	
정비 사업	브릿지론	X	X	X	X	X	X	X	X	X	X
	본PF ⁷⁾	X	X	X	X	X	X	X	X	X	X
	계	X	X	X	X	X	X	X	X	X	X
기타 사업	브릿지론	X	X	X	X	X	X	X	X	X	X
	본PF ⁷⁾	X	X	X	X	X	X	X	X	X	X
	계	X	X	X	X	X	X	X	X	X	X
총계		X	X	X	X	X	X	X	X	X	X

주 1) ~7) 앞 표와 동일

(2) 부동산 PF(대출) 보증 세부 내역(중도금대출, SOC 관련 사항은 미포함)

※ 책임준공은 연대보증·채무인수·자금보충 등과 중복으로 약정되므로 같이 표시하고, 중도금대출, SOC 관련사항은 미포함

- 1) 보고기간 말 현재 XX건의 정비사업 관련 PF(대출) 보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PF 보증 관련 일부 약정에는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1 참고) 등이 발생시 XXX백만원(전기말 XXX백만원)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있습니다.

<연결기업(또는 개별기업)>

(단위: 백만원)

사업 지역 ¹⁾	사업 장 구분 ²⁾	PF 종류 ³⁾	신용보강 종류 ⁴⁾	보증 한도 ⁵⁾ (전체)	부담률 ⁶⁾ (연결)	보증금액 (연결)	채무자	특수관계자 여부 ⁷⁾	채권기관 종류 ⁸⁾	대출잔액 ⁹⁾ (연결)		대출기간 ⁹⁾	만기일 ¹⁰⁾	유형 ¹¹⁾	책임공정금액
										당기	전기				
A	X	X	X	X	X%	X	X	X	X	X	X	'XX.XX ~'XX.X X	X	X	X
		조기상환조항(*1)조기상환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기재													
		기재된 신용보강 외 신용보강 유형(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기재													
기타 ¹²⁾	X	X	X	X	X%	X	X	X	X	X	X	'XX.XX ~'XX.X X	X	X	X
		조기상환조항(*1)조기상환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기재													
단독사업 계				X	X%	X				X	X				X
...
컨소시엄 계				X	X%	X				X	X				X

- 주 1) 사업지역 : 광역시, 특별시, 시 또는 군으로 표시
 2) 사업장 구분 : 공동주택,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등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분
 3) 브릿지론, 본PF로 구분
 4) 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 등으로 구분하되, 복수의 신용보강이 제공되는 경우 중복금액 제외하고 가장 큰 금액의 신용보강으로 기재
 5) 컨소시엄 형태의 보증·도급이 있는 경우 컨소시엄의 보증한도를 기재
 6) 컨소시엄 사업인 경우 연결회사 부담률 기재하되, 단독 사업인 경우 100% 기재
 7) 특수관계자인 경우 해당여부 표시(상세한 내용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주석에 기재)
 8) 은행, 증권회사, 대주단 등 채권기관 유형 기재
 9) 전기에 잔액이 있었으나 당기에 '0'인 경우도 기재하며(유동화증권이 아닌 PF대출의 잔액 및 기간 기재), 충당부채로 전환되어 감소된 경우 관련 사실 명시
 10) 부동산 PF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을 기재(유동화증권의 만기가 있는 경우 기재, 그 외의 경우 기재사항 없음)
 11) PF Loan 또는 유동화증권 종류를 기재
 12) 부동산PF 전체 보증금액(컨소시엄 포함) 기준으로 1%(또는 100억원)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기타로 일괄하여 표시

2) 보고기간 말 현재 XX건의 기타사업 관련 PF(대출) 보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PF 보증 관련 일부 약정에는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1 참고) 등이 발생시 XXX백만원(전기말 XXX백만원)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있습니다.

<연결기업(또는 개별기업)>

(단위: 백만원)

사업 지역 ¹⁾	사업 장 구분 ²⁾	PF 종류 ³⁾	신용보강 종류 ⁴⁾	보증 한도 ⁵⁾ (전체)	부담률 ⁶⁾ (연결)	보증 금액 (연결)	채무자	특수 관계자 여부 ⁷⁾	채권 종류 ⁸⁾	대출잔액 ⁹⁾ (연결)		대출 기간 ⁹⁾	만기 일 ¹⁰⁾	유형 ¹¹⁾	책임준공금액
										당기	전기				
A	X	X	X	X	X%	X	X	X	X	X	'XX.XX ~'XX.X X	X	X	X	
	조기상환조항 (*1)		조기상환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기재												
	기재된 신용보강 외 신용보강 유형(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기재														
기타 ¹²⁾	X	X	X	X	X%	X	X	X	X	X	'XX.XX ~'XX.X X	X	X	X	
	조기상환조항 (*1)		조기상환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기재												
단독사업 계				X	X%	X				X	X				X
...
컨소시엄 계				X	X%	X				X	X				X

주 1) ~ 12) 앞 표와 동일

(3)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정비사업 및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준공 미이행 시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공사 건수	도급 금액	약정 금액	대출 잔액	공사 건수	도급 금액	약정 금액	대출 잔액
정비사업 ¹⁾ (연결회사분)	X (X)							
기타사업 ¹⁾ (연결회사분)	X (X)							
계 ¹⁾ (연결회사분)	X (X)							

주 1) 컨소시엄에 따라 전체 및 연결회사 금액이 다른 경우 연결회사 금액은 괄호에 추가 표시

(4) 부동산 PF의 SOC 보증

연결회사의 SOC법인과 시행사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전체 XXX백만원(전기 XXX백만원)을 한도로 자금보충 및 자금제공 등의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으며, SOC법인의 필수 사업경비 부족시 자금을 보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또는 개별기업)>

(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공사건수	전체	연결회사분	공사건수	전체	연결회사분
보증한도	X	X	X	X	X	X

(5) 본 PF의 중도금대출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에 XXX백만원(전기말 XXX백만원)을 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기타사업과 관련해서는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에 XXX백만원(전기말 XXX백만원)을 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또는 개별기업) 단독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사업건수	보증한도	약정금액	대출잔액	사업건수	보증한도	약정금액	대출잔액
정비사업 ¹⁾ (연결회사분)	X (X)							
기타사업 ¹⁾ (연결회사분)	X (X)							
계 ¹⁾ (연결회사분)	X (X)							

주 1) 컨소시엄에 따라 전체 및 연결회사 금액이 다른 경우 연결회사 금액은 괄호에 추가 표시

(6) 기타 (PF 우발부채에 해당하나 (1)~(5)에 표시할 수 없는 사항 기재)

2. 非 PF 우발부채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에 아래와 같이 보증보험회사 등에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 등으로 현재 발주처 등에 대하여 XXX백만원(전기말 XXX백만원)의 계약이행, 분양보증 및 하자보증 등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종합요약표

<연결기업(또는 개별기업)>

(단위: 백만원)

구분	피보증처명	보증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보증처	특수관계자 여부	기타
제공한 지급보증 ¹⁾	X	X	X	X	X	X	X
제공받은 지급보증 ²⁾	X	X	X	X	X	X	X
기타 ³⁾	X	X	X	X	X	X	X
계			X	X			

주 1) 계약이행보증, 운영자금 지급보증, 주택분양보증 등 연결회사가 타인의 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

2)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연결회사가 계약 등을 위해 보증처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3)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제공받은 지급보증에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 기재

(2) 제공한 지급보증

<연결기업(또는 개별기업)>

(단위: 백만원)

피보증처	보증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보증처	특수관계자 여부	비고(설명)
X	X	X	X	X	X	X
계		X	X			

(3) 제공받은 지급보증

<연결기업(또는 개별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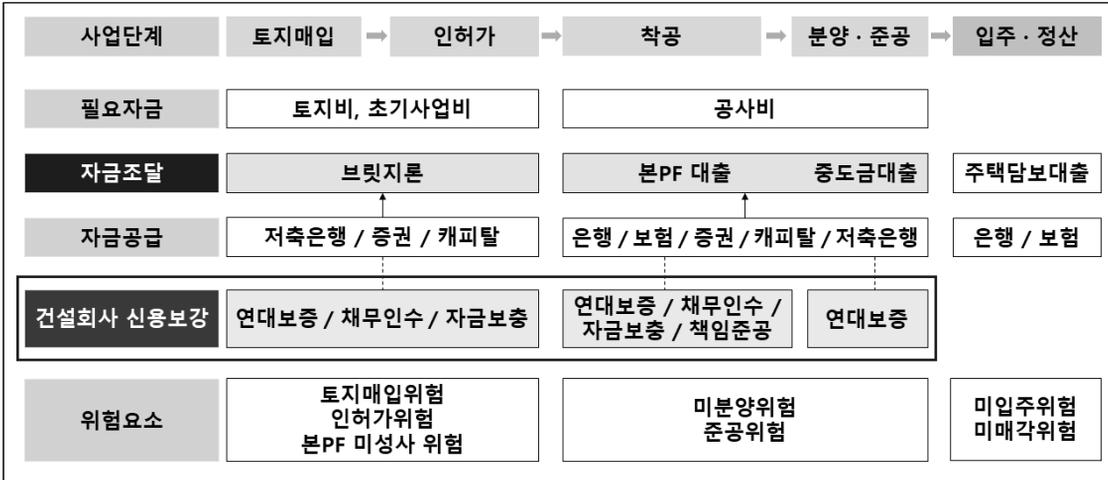
(단위: 백만원)

보증처	보증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특수관계자 여부	비고(설명)
X	X	X	X	X	X
계		X	X		

(4) 기타 (소송 등)

붙임2 - PF 사업 단계별 대출 및 신용보강 구조

※ 출처 : 건설회사 부동산 PF우발채무 리스크 범위 비교분석(Nice신용평가, 2023.3.21.)



< 주요 용어 정의 >

- ① 연대보증 : 보증인(시공사)이 주채무자(시행사) 등과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
- ② 채무인수 : 채무인수인(시공사)이 채무자(시행사)와 병존하여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중첩적 채무인수)
- ③ 자금보충 : 유동화회사가 PF대출금 자원마련을 위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유동화회사에게 부족자금을 대여하기로 약정
- ④ 책임준공 : 시공사가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대상 건축물을 준공해야 할 의무이며, 준공시 건설회사 우발채무 부담 해제

붙임3 - K-IFRS 제1037호 우발부채 관련 기준서 문단

10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우발부채: 다음의 (1)이나 (2)에 해당하는 의무

- (1)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 (2)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다음 (가)나 (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않는 현재 의무
 - (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 (나) 해당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27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 28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문단 86에 따라 우발부채를 공시한다.
- 29 제삼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전체 의무 중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의무 중에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 30 우발부채는 처음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발부채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생긴 기간의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는 제외).
- 86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보고기간 말에 우발부채의 분류별로 그 특성을 공시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공시한다.
 - (1) 문단 36~52에 따라 측정된 재무적 영향의 추정 금액
 - (2) 자원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정도
 - (3) 변제 가능성
- 87 어떤 충당부채나 우발부채를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해당 항목의 특성이 문단 85(1)·(2)와 문단 86(1)·(2)를 충족하기 위하여 하나의 주석항목으로 기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비슷한지를 고려한다. 따라서 다양한 제품의 보증과 관련된 충당부채는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제품보증과 관련된 것이더라도 법적 소송 중인 것은 별도의 유형으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88 같은 상황에서 충당부채와 우발부채가 함께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상호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방식으로 문단 84~86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공시한다.



2024년 기술개발 1조 4,097억원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총 1조 4,097억원 규모(신규과제 4,584억원) 기술개발(R&D) 사업에 대한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R&D) 사업은 올해 대규모의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며, 기저기술(딥테크) 분야에서 민간연계 기술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전략기술 분야 및 세계(글로벌) 진출·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정 방식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과도한 중복(다수) 지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지원체계를 보다 전략적이고 혁신적으로 개편한다.

2024년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 선별 능력을 활용하는 등 민간중심 기술개발(R&D)에 1,686억원을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스타트업)과 기술(테크)기반 혁신기업이 벤처투자사(VC) 등 민간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투자받을 경우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 방식 기술개발(R&D)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틱스(창업기업, 신규) : ('23) 859억원 → ('24) 1,201억원 전년대비 39.8% ↑

* 스케일업틱스(혁신기업, 신규) : ('23) 285억원 → ('24) 386억원 전년대비 35.4% ↑

아울러, 제품개발에 이어 신속한 양산으로 매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대규모 자금을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고, 과제 성공 이후 융자금을 회수하여 우수 과제에 재투자하는 융자연계형 기술개발(R&D)도 추진할 계획이다.

② 전략기술 분야 기술개발(R&D)에 621억원을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하여 인공지능(AI), 자율주행, 항공·우주 등 파급효과가 큰 미래 혁신 선도기술을 지원하는 별도 분야(트랙)를 신설하고,

소부장 전략기술의 국산화, 세계(글로벌) 밸류체인(GVC)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해 창업기업부터 확장(스케일업)(Scale-Up) 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③ 혁신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협력 기술개발(R&D)에 267억원을 지원한다.

해외인증, 수출실적 등 세계(글로벌) 진출역량을 보유한 혁신기업의 미래기술 선도를 위해 기술개발(R&D)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동일 목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는 '경쟁형 기술개발(R&D)'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세계(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 시점부터 세계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전용 기술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세계(글로벌) 확장(Scale-Up)을 위한 세계(글로벌) 기술개발(R&D) 협력 거점*도 조성해 현지 정보조사, 관계망(네트워킹) 및 세계(글로벌) 밋업(Meet-up)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보스턴 켄달 스퀘어(Kendall Square) 내 '씨아이씨 케임브리지(CIC Cambridge)' 사무실을 거점으로 활용

④ 지역의 기술우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기회 확대를 위해 518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밀착지원하고 있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지역산업과 연계한 기술개발(R&D)사업을 기획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등 지역기업의 기술개발(R&D)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⑤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술개발(R&D) 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기술개발(R&D) 선정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사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등 기술개발(R&D) 사업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과제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 과제를 평가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신청 과제별 '책임평가위원(가칭)'을 지정하여 평가위원의 과제 책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업의 자율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당 지원 횟수를 제한하여 중소기업이 스스로 혁신과제를 선별·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는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사업이 대대적 구조 개편과 제도혁신이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이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면서,

"그동안 없었던 과감한 기술개발(R&D) 혁신으로 '정부의 투자 효율성'과 '기업의 혁신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건 등을 상세히 공고할 예정이며(참고1), 2월까지 범부처 설명회 및 지역별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tech.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전화 상담실(콜센터) (☎1357)에도 문의가 가능하다(참고2).

참고1. 2024년 기술개발 지원사업(통합공고) 개요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추진 일정			
						구분	공고	접수	선정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422	4년	20	65%	1차	1월	2월	5월
						2차	4월	5월	8월
						3차	7월	8월	10월
	시장확대형	920	2년	6	75%	1차	1월	2월	5월
						2차	4월	5월	8월
						3차	7월	8월	10월
	시장대응형	459	2년	5	75%	1차	1월	2월	5월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추진 일정							
						구분	공고	접수	선정				
						2차	4월	5월	8월				
						3차	7월	8월	10월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1,284	1년	1.2	80%	1차	1월	2월	5월				
						2차	4월	5월	8월				
						3차	7월	8월	10월				
	TIPS	일반형	807	2년	5	80%	상반기	1월	세부 사업공고 참조				
							하반기						
		특화형 (딥테크 팁스)	394	3년	15	80%	상반기						
하반기													
산학연 Collabo 기술개발(R&D)	산학협력 기술개발	예비연구	10	8개월	0.5	75%	상반기				1월	2월	5월
		사업화기술 개발(R&D)	10	2년	2.6	75%	상반기				1월	2월	4월
	산연협력 기술개발	예비연구	4	8개월	0.5	75%	상반기	1월	2월	5월			
		사업화기술 개발(R&D)	6	2년	2.6	75%	상반기	1월	2월	4월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 (현장적용)	119	3년	4.5	75%	하반기	2월	2월~ 3월	6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37	3년	연봉 50%	50%	상반기	2월	2월	5월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39	3년	연봉 50%	50%	상반기	2월	2월	5월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25	3년	연봉 50%	50%	상반기	2월	상시	상시				
	중소기업연구인력 현장맞춤형양성지원	48	2+1년	12.1	100%	상반기	1월	1월	2월				

- 1) 지원규모 : 각 사업별 신규과제 지원금액(계속과제 지원금액 및 기획평가비 제외)
- 2) 개발기간 · 지원한도 · 출연금 비율 : 지원 가능한 '최대' 수준을 의미함
- 3) 지원비율 및 추진일정 : 세부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진행, 정확한 지원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참고2. 사업별 문의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관리)기관	연락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스케일업사업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기술개발과	(스타트업사업실)	02-3440-7421
	전략형				
	TIPS		기술창업과	한국엔젤투자협 회	
산학연 Collabo 기술개발(R&D)	산학협력	예비연구	기술개발과	(전략협력사업실)	
		사업화기술개 발(R&D)			
	산연협력	예비연구			
		사업화기술개 발(R&D)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 (현장적용)		디지털혁신과	(제조DX혁신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인력정책과	(지역정책기획실)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24.1.1.~'24.12.31.)한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중소기업 사업주 간담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반영하여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이는 한시적 조치라고 밝혔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 다만, 특별감독,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 고용노동부 -

■ 안전보건관리체계란?

◎ 안전하기 위한 조직의 활동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우리 회사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우리 사업장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R鷹 만들어야합니다
-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다르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조치를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및 실행방안

경영자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설정 ○ 모든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공표게시
안전보건 인력·예산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조직·담당자를 지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 ○ 안전·보건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개선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TBM)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에 대한 근로자 참여·공유 ○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절차 마련(안전보건제안제도, 야차사고 신고, 안전소통채널 운영 등) ○ 도급용역·위탁시 산재예방 역량을 갖춘 수급인 선정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 평가	○ 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마련 및 훈련점검 ○ 산재사고, 야차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반기 1회 이상 정기적 점검·평가

01. 중대재해처벌법이 '24. 1 .27.부터 왜 갑자기 확대 적용되었나요?

- ✓ 중대재해처벌법은 '21.1 .26에 제정되어 '22.1 .27.에 50인(역)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50인(역)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 정부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의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50인 미만 기업 83.7만개소 중 절반 수준인 45만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 교육 ·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 ✓ 다만, 지난 해(23.9.7.) 50인(역)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발의 · 논의되었으나
 -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법안대로 '24.1.27.부터 50인(역)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02.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 받나요?

- ✓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 ‘안전 · 보건관리체계’ ’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 안전 · 보건관리체계구축 · 이행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 ✓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 1 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 ① 사망자가 1 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 명 이상 발생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 년 이내에 3

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0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요?

- ✓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 ✓ 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 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 ✓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됩니다.

고의·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 ☞ 지하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 중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사업주가 재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사망 사고
- ☞ 숙취 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익사

04.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이나 대기업만 대상으로 알았는데 식당·카페·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해당 되는 건가요?

- ✓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이 됩니다.
- ✓ 이는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됩니다.

05. 음식점 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 ✓ 제조·건설업등에비하여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50 명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짐육 배합기 또는 자동양념 혼합기에 팔이 끼이거나 식품운반용 승강기와 안전난간사이에 끼이는 등의 사고 발생

- ✓ 따라서, 음식점·제고장 등개인사업주도중대재해처벌법대상이고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 하게 적용되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06. 우리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 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입니다.
-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 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이 때 장소적으로 인접 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4개의 직영매장이 있고, 각 직영매장에 상시근로자를 4명씩 배치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 = 4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16명)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법제3조)

07.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요?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요?

- ✓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 ✓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 ✓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

됩니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여부 또는 종업원 수 산정기준과는 별개임

08. 2천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가요?

- ✓ '24.1.27 이전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50억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 ✓ 그러나, '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 하게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text{상시 근로자 수} = \frac{\text{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text{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근로자 연인원 산정 시 업무가 바쁠 때 가끔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1명으로 포함

09. 우리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 처음 알았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 ①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사내 전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 하십시오.
- ② 우리 사업장에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 ③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십시오.
- ④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십시오.

- 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를 잘 갖추십시오.
 -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 ✓ 중소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를 통해 기업의 상황에 따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예시·사례·절차 등을 활용하여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www.koshasafety.co.kr) → ‘중대재해처벌법자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매뉴얼」,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등 활용

10. 제조업, 건설업 이외에 식당, 호텔 등 다른 업종에서 참고 할만한 자료가 있나요?

- ✓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 음식점·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업, 호텔 등 숙박업 등을 포함하여 주요 20개의 업종에 대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마련·배포하였습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kr)내, ‘중대재해처벌법자료’에서 확인
- ✓ 가이드북과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동종업종의 재해 발생 유형,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고 우리 사업장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관련 협·단체와 함께 영세 중소기업, 개인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11. 영업과 생산, 안전관리까지 도맡아야 하는 영세업체는 법 적용 준비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정부 지원이 있나요?

- ✓ 50명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내, '산업안전대진단' 팝업창(1.29부터 참여 가능)
- ✓ 누구나 쉽게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항목에 대한 우리 사업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을 적극 신청하거나,
 - 가이드안내서 등 정보를 활용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 ✓ 아울러,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을 상담·신청하거나(대표번호 1544-1133),
 -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나요?

- ✓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관리자 등을 3명 이상 선임한 500명 이상 사업장, 시공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상시 근로자 수가 5~50명 미만 기업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 조직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13.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안전 전문인력을 별도로 두어야 하나요?

-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안전전문인력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5~50명 미만 중 일부 규모·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전문인력을 두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0-50명 미만 중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등 5개 업종에 한해 1명 선임

- (자격)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이수 자선임 가능
- (역할)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 측정·개선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 다만,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4.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도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하나요?

- ✓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실시 (절차마련, 절차에 따른 실시 및 실시 결과 보고)한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 전화가 계속 오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이 있는 건가요?

-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분,
 - 그 외 별도의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따라서,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면 되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안전보건교육은 없습니다.

- ✓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이 필요한 기업은 안전보건공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20개 업종)

▲금속주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육상 화물 취급업,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인쇄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강선 건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벌목업,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목재 가구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도금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가세영세율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1월 2일(화)	1월 3일(수)	1월 4일(목)	1월 5일(금)	1월 8일(월)
미 달 러 (USD)	1289.40	1299.30	1308.80	1310.20	1313.70
위 안 화 (CNH)	180.84	182.63	183.19	182.94	183.00
일 본 엔 (JPY)	915.60	914.55	914.76	905.68	907.47
유 로 화 (EUR)	1423.63	1421.82	1429.86	1434.28	1437.19
영 국 파 운 드 (GBP)	1641.92	1639.85	1657.99	1662.12	1670.11
캐 나 다 달 러 (CAD)	973.76	975.38	980.30	981.20	982.90
홍 콩 달 러 (HKD)	165.12	166.24	167.64	167.78	168.17

통 화 명	1월 9일(화)	1월 10일(수)	1월 11일(목)	1월 12일(금)	1월 15일(월)
미 달 러 (USD)	1314.80	1312.10	1320.10	1316.00	1314.10
위 안 화 (CNH)	183.47	182.96	183.83	183.51	183.35
일 본 엔 (JPY)	912.14	908.94	906.60	906.24	906.03
유 로 화 (EUR)	1439.84	1434.32	1448.55	1444.11	1438.55
영 국 파 운 드 (GBP)	1675.91	1667.55	1682.07	1679.81	1673.97
캐 나 다 달 러 (CAD)	984.76	979.76	986.70	982.60	979.94
홍 콩 달 러 (HKD)	168.42	167.87	168.82	168.34	168.03

통 화 명	1월 16일(화)	1월 17일(수)	1월 18일(목)	1월 19일(금)	1월 22일(월)	1월 23일(화)
미 달 러 (USD)	1319.30	1329.00	1343.20	1342.40	1336.50	1334.70
위 안 화 (CNH)	183.63	184.70	186.19	186.06	185.35	185.11
일 본 엔 (JPY)	905.09	903.22	906.74	906.57	901.91	901.52
유 로 화 (EUR)	1444.44	1445.69	1461.67	1460.26	1456.25	1452.35
영 국 파 운 드 (GBP)	1678.74	1679.39	1702.84	1705.85	1697.89	1696.00
캐 나 다 달 러 (CAD)	982.39	984.92	994.37	995.29	995.01	990.06
홍 콩 달 러 (HKD)	168.64	169.79	171.72	171.65	170.94	170.73

통 화 명	1월 24일(수)	1월 25일(목)	1월 26일(금)	1월 29일(월)	1월 30일(화)	1월 31일(수)
미 달 러 (USD)	1336.00	1339.10	1335.70	1336.60	1336.90	1330.60
위 안 화 (CNH)	186.00	185.65	186.45	186.12	185.85	185.15
일 본 엔 (JPY)	900.82	907.34	905.04	902.62	906.74	901.89
유 로 화 (EUR)	1450.63	1457.61	1448.43	1449.34	1448.73	1443.10
영 국 파 운 드 (GBP)	1695.85	1703.74	1697.14	1696.35	1699.60	1689.60
캐 나 다 달 러 (CAD)	992.83	990.09	991.06	993.53	997.02	992.95
홍 콩 달 러 (HKD)	170.81	171.29	170.84	171.05	171.10	170.21

※ 상기의 기준·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회사인 (주)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외화외상매출의 회계반영, 결산평가와 부가세영세율 과세표준계산시 적용됩니다.

※ (주)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http://www.smbs.biz>, 전화 : 3705-5500)에서 당일의 기준환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